



개발도상국 국내자원동원(DRM) 지원방안 연구

2016. 12

개발도상국 국내자원동원(DRM) 지원방안 연구

2016. 1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저자약력

김 지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개발협력) 박사

• 주요 저서

- ▷ 2016.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검토, 개발과 이슈 26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개발과 이슈 25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6. “SDGs 지표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6(2):3-14.
- ▷ 2015.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저)
- ▷ 2015. “빈곤의 재정의,” 「국제개발협력」 2015(1): 1-20.

연구보조원

김근혜 영국 서섹스대학교 개발학 학사

임해린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 학사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차

국문요약	1
Executive Summary	7
I. 서론	15
II. 개발과 DRM: 조세 확대를 위한 이슈와 지원 분야	18
1. 개발자원과 DRM의 정의	18
2. 조세 수입과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19
3. 공공 재정 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24
4. 조세와 국가 형성(State-building)	27
5. 세금, 민간 부문 개발과 성장	31
6. 채굴자원 세제(Extractive Resource Taxation)	32
7. 국제 자본 세제(International Capital Taxation)	33
III.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에서의 DRM과 모니터링	37
1. 조세정책과 거버넌스의 변화	37
2. 불법 자금 흐름(Illicit Financial Flows)	39
3. 도난당한 자산 반환(Stolen Asset Recovery)	42
4. 조세 회피와 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43
5. 조세 역량강화	46
6. 기타	48
IV. 조세개혁과 국제조세협력	51
1. 국경없는 조세감시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	52
2. 아디스 조세 구상(Addis Tax Initiative, ATI)	53
3. OECD DAC의 DRM 측정	55
4. 기타 조세관련 Initiatives	58

목차

V. DRM 지원 사업 사례분석	61
1. 르완다의 조세개혁	62
2. 파라과이	66
VI. 한국의 DRM 관련 사업 현황	69
1. 국제사회의 DRM 지원 현황	69
2. 한국 중점협력국의 DRM과 ODA 지원	72
3. 한국과 KOICA의 DRM 지원현황	76
VII. 결론: 한국과 KOICA의 DRM 지원확대를 위한 제언	80
참고문헌	83
APPENDIX 1.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DRM 관련 원문)	87
APPENDIX 2. 중점협력국 조세 데이터	94

그림 목차

〈그림 1〉 조세수입 증가 동향	20
〈그림 2〉 낮은 세수의 악순환	21
〈그림 3〉 조세시스템의 다양한 주체들	22
〈그림 4〉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요 개발도상국의 정부 수입: 2015년	29
〈그림 5〉 아프리카 주요 개발도상국의 정부 수입: 2015년	29
〈그림 6〉 중남미 및 CIS 주요 개발도상국의 정부 수입: 2015년	30
〈그림 7〉 ODA, FDI, IFFs 추세	33
〈그림 8〉 “조세와 개발” 관련 ODA 약정액	56
〈그림 9〉 르완다의 정부 수입구조 변화	63
〈그림 10〉 파라과이의 정부 수입구조 변화	67
〈그림 11〉 2015년 DRM 부문 지역 및 소득수준별 ODA 지원 현황	69
〈그림 12〉 2015년 한국 중점협력국의 조세수입과 DRM ODA 수원현황	74

표 목차

〈표 1〉	개발재원의 구분	18
〈표 2〉	조세지원 원조 활동의 종류	26
〈표 3〉	개발도상국 지역별 불법자금 유출 현황: 2004-2013	34
〈표 4〉	개발도상국 GDP 대비 지역별 불법자금 유출 비중: 2004-2013	34
〈표 5〉	TIWB의 활동과 수입(revenue)의 증가 내역	52
〈표 6〉	Addis Tax Initiative 가입 회원국	53
〈표 7〉	Addis Tax Initiative 이행과제	54
〈표 8〉	DRM 지원 ODA 현황	56
〈표 9〉	영국, 독일, 일본의 조세분야 사업 사례	61
〈표 10〉	르완다 납세자 신고 현황	63
〈표 11〉	공여국 전체와 영국의 르완다 지원 순 ODA	64
〈표 12〉	영국의 르완다 국세청 지원 ODA	65
〈표 13〉	파라과이의 세금활동 지표	67
〈표 14〉	2015년 DRM 부문 ODA 수원 상위 20개국	70
〈표 15〉	한국 ODA 중점협력국의 경제성장과 원조 및 정부 수입 현황	73
〈표 16〉	한국 ODA 중점협력국의 불법자금 유출 현황: 2004-2013	75
〈표 17〉	2015년 한국의 DRM 지원 실적	76
〈표 18〉	KOICA의 조세역량 강화사업	78
〈표 19〉	KOICA 조세역량강화 연수사업: 1991-2015	78

국문요약

지난 2015년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수립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SDGs를 달성을 위한 재원규모를 사회개발에 매년 660억 달러가, 인프라 투자에 7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적개발원조(ODA) 중심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과는 달리 새로운 재원과 매커니즘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해 지고 있다. 개발재원은 2002년 몬테레이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어 2008년 도하회의까지 계속해서 논의되었고, 2010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 바 있다. SDGs를 앞두고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 3차 개발재원 회의에서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대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동원(DRM)은 가장 확보가능성이 높은(promising) 재원으로 부각되면서 SDGs에서도 목표 17의 세부목표 17.1에서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표 17.1.1은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수익, 17.1.2는 국내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 비율로 확정한 것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개발재원 논의는 국제민간-국제공공의 결합형태인 혼합금융을 중심으로 개발재원 확대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 사실 상 여러 보고서와 학술연구를 통해 개발재원의 효과적 확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내재원동원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DRM의 개념정의부터 실제 각국의 프로젝트 현황까지를 망라한 종합연구를 통해 향후 KOICA가 동 분야에서의 사업발굴 및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초연구로 기획되었다. 특히 조세분야에 한정되어있는 DRM논의를 AAAA에서 규정한 다각적인 이슈들까지 확대하여 그 개념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논의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국제적 논의를 파악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재원동원(DRM)은 개발도상국의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OECD(2010)은 DRM을 국내재원으로부터 창출하는 저축과 이를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투자에 분배되는 모든 자원으로, 가장 광의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USAID (2015)와 EU(2010)은 DRM을 국내공공재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세금 및 비과세 자원 등 국내 재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 수입의 창출과 지출의 과정으로 보았다.

낮은 세수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저하시켜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을 둔화시킨다. 이러한 공공재의 부족은 결국 조세저항과 탈세의 원인이 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세정책의 수립과 이행불능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조세당국은 저항이 큰 영역보다는 보다 세금을 걷기 쉬운 영역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결국 탈세로 인한 인센티브가 많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다시 세수가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이러한 ‘낮은 세수의 함정(low revenue trap)’을 극복하기 위해 조세시스템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의 공공 재정관리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해외투자 자본에 대한 세금, 불법자금 유출과 국내민간부문의 활성화 등 국가의 형성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DRM은 정부수입의 확대를 통한 국가 개발 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아디스아바바(AAAA)에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 중 일부를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AAAA에서 DRM은 행동영역 중 가장 첫 번째로 정확히는 국내공공자원(Domestic public resources)로 명시되어 있다. 국내 공공 자원(재원)은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을 높이며, 거시 경제 안정성 관리에 필수 요소이다. 이는 비단 AAAA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약속과 책임 차원 뿐 아니라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동원의 핵심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다른 조세관련 협약이나 또는 ODA를 통한 개발 논의에서 진일보하여 AAAA는 건전한 정책,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조세확대, 조세행정 안정을 통한 추가 자원 창출과 이에 따르는 부패척결에 이르기까지 국가 거버넌스의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금융흐름 및 탈세를 방지하는 것과 국내자원 동원의 연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단일 국가 차원에서의 조세정책을 넘어 국제조세협력을 통한 수원국 국내재원동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AAA가 국내재원동원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조세행정능력 강화를 통한 조세수입의 창출 또는 확대를 넘어 국제적인 조세협력을 통한 조세체계의 변화와 강화, 그 안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취약한 조세 시스템 안에서 정부는 납세자를 신뢰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세금을 통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악순환이 생겨난다. 따라서 조

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정부와 시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공동 관심을 촉진하고 국가 역량의 다른 측면에서 개선을 촉진할 수 있으며, 조세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10).

이러한 DRM관련 SDGs와 개발재원 논의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기구와 이니셔티브가 작동하고 있다. 국경없는 조세감시관(TIWB)은 개발도상국들이 MNEs 세무조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현직 EH는 전직 세무조사 공무원을 파견하여 개발도상국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7월 수립되어 한국도 가입한 ATI는 2020년까지 조세부문 기술 협력에 대한 지원을 2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SDGs를 달성하고 이를 통한 포용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 동원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 DAC 역시 CRS 코드를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사회의 DRM 지원 노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이니셔티브, 도난자산회수(StAR) 구상, 채굴산업투명성구상(EITI), 국제자금세탁방지(FATF), UN 반부패협약(UNCAC),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UN전문가위원회, 조세목적의 투명성과 정보공유 글로벌포럼, 유럽집행위원회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 지역 조세기구들이 국제 조세협력의 주체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 관련 기구들의 활동과 함께 ODA 및 기타 국제협력을 통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DRM 지원 사업들의 성과는 르완다와 파라과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르완다는 수원국의 조세제도 개혁의지와 영국을 위시한 양자간 ODA 지원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관계를 설정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그 결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총 세수는 약 50% 증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발 목적, 특히 건강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내 자원 동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 르완다의 모든 보건 지출의 약 53%가 보건을 목적으로 한 외부 자원이었지만 2013년 기준 38%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보건 지출이 US\$ 32에서 US\$70로 두 배가 증가했다. 보건분야의 정부지출은 GDP의 3.2%에서 6.5%로 확대되었다. 이는 DRM 확대를 통해 정부가 자체적인 복지에 예산에 배분을 하게 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파라과이는 중남미 조세 전문가들 간의 삼각협력을 통해 세계개혁에 성공했으며, 세율을 낮추었음

에도 불구하고 세수기반의 확충과 납세준수 캠페인을 통해 정부수입이 증가하는 공공재정관리(PFM) 역량강화의 좋은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OECD DAC 공여국들 역시 2010년 이후 DRM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국가들이 DRM 분야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수원국 관점에서는 2015년 기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47%로 가장 높고, 아시아 31%, 중남미 6% 순이었다. 전체 ODA 지원액 상에서의 비율이 아프리카 44%, 아시아 38%, 중남미 12%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극명하게 아프리카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52%, 중저소득국(low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26%로 대부분의 DRM 관련 ODA가 저소득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전체 ODA 지원 총액비율로 보면 최빈국 47%, 중저소득국 30.5%로 DRM 지원에 있어 최빈국 집중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GDP 대비 조세수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볼리비아로 28.3%, 그 뒤로 베트남(24.26%), 모잠비크(21.9%), 우즈베키스탄(20.2%), 세네갈(18.8%) 순이었다. 이들은 세네갈을 제외하고는 모두 5.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SDGs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GDP 대비 15% 이상의 조세수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경제성장률과 규모에 비해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진 나라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DRM 목적의 ODA가 지원되는 국가를 살펴보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인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2004년 이후 높은 수준의 불법자금유출 흐름을 보이면서도 그 액수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페루 등의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데이터들 통해 확인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은 DRM 목적으로 총US\$3.4백만 규모의 ODA를 지원하였다. 2015년 실적은 모두 KOICA에서 지원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한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르완다 『국세 및 관세서비스 역량 강화사업』은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이 두 사업의 총액이 US\$3.13백만에 달해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OICA의 사업 중 2010년

이전까지 추진된 조세분야 관련 사업은 연평균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DRM 조세역량 강화 관련 ODA 지원은 UNI-Pass로 널리 알려져 있는 관세청의 ICT 기반 싱글윈도우 시스템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왔다. 또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또는 세무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이 총 120여 과정을 개설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재정관리 역량 강화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반 예산지원, 섹터예산지원, 바스켓 파이낸싱, 남-남협력 사업 등 다른 지원방식(modality)을 활용한 ODA 지원은 지금까지 DRM 관련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ATI 가입 이후 DRM 분야에 대한 ODA 증액을 약속한 한국의 ODA는 지원 분야의 다양성과 함께 지원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함을 확인했다.

결론으로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DRM과 관련된 지원은 특히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 그리고 수원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기반 접근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조세개혁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 징수과정, 징수된 세금을 국내 복지와 경제성장에 사용하는 순환과정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재정 시스템을 비롯한 거버넌스의 개혁과 제도의 확립, 안착, 수정 및 개선 등의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ODA도 다양한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사업 이외에 세원발굴을 위해서 수원국의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체계를 수립하는 정책자문 사업과 함께 지방재정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할 패키지형 프로그램의 발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조세투명성 확보와 ODA의 연계는 국내외적인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다. 한국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EDCF, KOICA가 모두 참여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별 특성을 고려한 DRM 지원 전략을 섹터로 구분하여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취약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취약국의 경우 DRM 지원이 국가형성(state-building)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아이티, 차드 등에서의 DRM 지원이 높은 것이 국가형성 전략과 연계되어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조세수입과 정부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과 원조의존도 간의 음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원조의존도를 경감할 수 있는 도구로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ODA 지원이 없이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ODA 수원 졸업의 가능성이 높거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전략 및 공여국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를 비롯한 한국의 DRM 관련 ODA는 프로젝트 사업 또는 초청 연수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수원국 시스템 이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예산지원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원국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한 절충으로 바스켓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orld Bank,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수원국 내에서 조세분야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다자신탁기금에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원국내에서 원조규모가 크고 거버넌스 분야에 전략 우선순위를 두는 주요 공여기관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DRM 분야 ODA와 관련하여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국가 및 ODA 이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RM과 관련하여 수원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활동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조세제도의 형성과 개혁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과 문화, 정부 전체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한 가운데 조세제도의 수립과 세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우선 연구대상국은 출구전략 수립이 필요한 국가이거나, 취약국 중 비교적 KOICA의 사업경험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재 수원국 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른 공여기관을 파악하고 공동 프로젝트 등의 파트너십을 강화 방안 역시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working to achieve these goals through various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imates that the funding for achieving SDGs is US\$ 66 billion annually for social development and US\$ 7 trillio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but unlike the implementation of MDGs center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fforts are being made to secure new sources of funding and mechanisms. Discussion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ave been ongoing since the Monterey Declaration in 2002 and continued until the Doha meeting in 2008, and was once again highlighted in the 2010 Busan Global Partnership. With the SDGs ahead, in July 2015, at the Third Development Finance meeting held in Addis Ababa,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for more than a decade have finally settled down.

As domestic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emerged as the most promising sources of funding for development, it has been reflected in the SDGs on the target of 17.1 “Strengthen domestic recourse mobilization,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domestic capacity for tax and other revenue collection” under the goal 17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indicator 17.1.1 total government revenues as a proportion of GDP and 17.1.2 proportion of domestic budget funded by domestic taxes. However, discussions on development finance in Korea tend to be concentrat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nd/or the expansion of development financing centered on mixed finance, which is a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private and international public funds. In fact, through various reports and academic research on the development finance, the studies or discussions on DRM have been rather inactive.

At this extent, this study was planned as a ground research that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KOICA's exploration and expansion in this issue by covering the issues from the concept definition of DRM to actual project status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DRM discussions, which are limited to the tax sector,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issues defined by AAAAA so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omestic debate in future. Also, the report can be utilized to grasp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further to identify the potential projects at the end.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DRM) means all resources generated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meantime, OECD (2010) defines DRM as the widest definition of savings from domestic sources and all resources allocated to economic and socially productive investments. USAID (2015) and EU (2010) define it as domestic public funds, and as a whole process of generating and spending government revenues from domestic sources such as tax and non-taxable resources.

Low tax revenues depress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low public goods and services provision. This lack of public services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ax resistance and tax evasion, leading to the im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d imposing tax policies. In the end, the tax authorities focus more on areas where they can work easily rather than on areas with high resistance, and it leads to a perception that incentives for tax evasion are larger, resulting in a vicious cycle in which tax revenues are lowered agai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ow revenue traps' or 'vicious circle of low revenue',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tax system raise awareness of each role and build the national public finance management capacity.

It also includes various issues that affect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the state, such as the right to domestic natural resources, taxes on international capital, illegal financial flow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private sector related

to the securing of national financial revenues. In sum, DRM can be viewed as an overall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government revenues, and the Addis Ababa (AAAA) endeavored to capture some of the various issues that arise in this process.

In AAAA, DRM is defined as domestic public resources mobilization in the very first of the action areas. Domestic public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re essential to providing public goods and services, increasing equity, and managing macroeconomic stability. It is a key component of mobilization of development resources to achieve SDGs, as well as social commitment and accountability dimensions emphasized by AAAA. AAAA also discuss the overall governance of the country from sound tax policie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tax expansion, creation of additional resources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and subsequent corruption in accordance with other tax treaties or discussions on development through ODA. It also clarifies the prevention of illegal financial flows and tax evasion and the linkage of mob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s.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is globalized world, the emphasis is on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s through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beyond the border line. The way in which AAAA deals with DRM is not only the creation or expansion of tax revenue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ax administration ability, but also the transform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tax system through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the change of domestic governance for securing the most sustainable development resources. In short, AAAA recognizes that, in a vulnerable tax system, the government does not trust taxpayers, and taxpayers have a vicious circle of little incentive through taxes. Thus, breaking the vicious cycle by strengthening the taxation capacity can promote common interest 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government and citizens, promote improvement in other aspec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en the tax management system and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and so improve accountability (OECD 2010).

Various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initiatives are working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DRM-related SDGs and development resources. The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TIWB) dispatches former tax auditors to the countries in order to assist tax investigators in addressing the difficulties of MNEs tax investig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are either directly involved or offer advice. Addis Tax Initiative, which was established in July 2015, aims to double the support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tax sector by 2020, and aims to strengthen the mobilization of resources to achieve SDGs and ensure inclusive development. The OECD DAC is also working to monitor DRM support effor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introducing CRS codes in 2016.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and UN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Sharing for Tax Purposes, regional development banks including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regional tax organizations are actively engaged i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In addition to the activities of tax-related organizations, there are a variety of projects through ODA and o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uccess cases of these DRM support projects can be seen in the case of Rwanda and Paraguay. In the case of Rwanda, it is regarded the establishing a long-term supportive relationship with donors including UK as well as the willingness of the recipient country to reform its tax system as major factors of success. As a result, the total government revenues by GDP increased by about 50% from 2001 to 2013, and these resul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s for development purposes, particularly in health and education sectors. Approximately 53% of all health spending in Rwanda in 2008 was external resources including ODA for health purposes, but fell to 38% in 2013.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has doubled up from US \$ 32 to US \$ 70 over the same period.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increased from 3.2% of GDP to 6.5%. This is a good example of the government allocating its DRM to its own welfare budget. Paraguay succeeded in reforming the tax system through triangular cooperation through the Latin American tax experts communities. It is a good example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PFM), which increases government revenue through the tax base expansion and tax compliance campaign despite the lower tax rate.

OECD DAC donors have also continued to expand DRM-related activities since 2010.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Canada, and Norway are leading countries in DRM support. On the recipient side, support for Africa is the highest at 47%, followed by Asia at 31% and Latin America at 6%. Compared to Africa 44%, Asia 38%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12%. The proportion of total ODA support is more noticeably concentrated in Africa. In terms of income levels, the DRM-targeted ODA has been allocate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52%) and 26% to the low-income countries (LMICs).

Among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of Korea, Bolivia had the highest tax revenue with respect to GDP with 28.3%, followed by Vietnam with 24.26%, Mozambique with 21.9%, Uzbekistan with 20.2% and Senegal with 18.8%. They are the countries (except Senegal) with a growth rate of over 5.5% and most of the government revenues depend on tax revenues.

According to the various assumptions and calc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global standards such as SDGs and climate change,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ax revenue should be more than 15% of GDP. In this regard, countries such as Bangladesh, Pakistan, Sri Lanka, Ethiopia and Indonesia can be categorized as having a burden of increasing tax revenue relative to economic growth and scale. However, when we look at the countries where ODA for DRM is actually supported,

it is confirmed that the support for Sri Lanka, Bangladesh and Indonesia is relatively low. Data also confirm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ountries such as Vietnam, Indonesia, Bangladesh, Azerbaijan and Peru, where the amount of illegal financial flow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2004.

By 2015, Korea has provided a total of US\$ 3.4 million in ODA for DRM purposes. All of the reported projects in 2015 was provided by KOICA, and the two projects among them amounted to US\$ 3.13 million, accounting for the majority of the total. Among KOICA's projects, tax-related projects carried out before 2010 were only about 0.2% per annum. Korea's support for ODA related to strengthening taxation has been supported mainly by the support of ICT-based single window system of KCS which is widely known as UNI-Pass. In addition, the train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or tax experts in developing countries has opened a total of more than 120 courses. However, ODA support with utilizing other modalities such as general budget support, sector budget support, basket financing, and South-South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strengthening public finance management capacity had not been tried yet. Korea's ODA, which promised to increase the ODA for DRM sector after joining ATI, should be diversified in support field and diversification of modality.

In conclusion, this report emphasizes Korea's DRM-related support should be based on particularly its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and its close partnership approach with the recipient country. In general, tax reform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irculation process that uses the tax collection process carried out transparently, the collected tax on domestic welfare and economic growth while minimizing the tax resistance of the people. In addition, governance reforms, including the public financial system,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settlement,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must take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Korea's ODA also needs to find programs that are supported by various governance programs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period of time. Secondly, in addition to the short-term and rather technical projects, we need to develop “package program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taxation system of the recipient country with the tax consultation project and the system and policies related to local finance. Thirdly,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taxation and DRM related ODA,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policy coherence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possible to plan a pilot project to enhance policy coherence that is considered to be the weakest in Korea. It is possible to envisage a partnership program in which the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CF, and KOICA participate.

Among Korea’s key partners, Myanmar, Bangladesh, Pakistan and Sri Lanka can be categorized as fragile states. In particular, it is emphasized that DRM support should be provided throughout the state-building process in fragile states i.e. Afghanistan, Haiti, Chad,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it as a tool to alleviate aid reliance by paying attention to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id inflows and government revenues regarding the aid dependency. When we think of the ultimate goal of aid is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without ODA suppo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part of the exit strategy of donors especially in the countries with high economic growth rates.

Also, the modality of Korea’s DRM-related ODA is very limited in either project or training program. As the discussions on the use of country system become active, the budget support should be more favorable, however, the donor country risk still remains. Instead, we need to expand DRM related ODA by using the basket financing.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ways in whic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MF will support the multilateral trust fund, which is being implemented to support the tax sector in the recipient country. It is also possible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with ODA implementation agencies such as the UK, Norway,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currently leading donors related to the DRM related ODA.

Lastl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 DRM demand and the activities of the donor agencies. The formation and reform of the tax system is not simply a matter of approach from a technical point, but rather a close examina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culture, and structure of the entire government of the country. Thus we need to target specific countries which we can engage in the taxation sector. Then th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other donor organization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r planned to be implemented in the sector. We can possibly seek the partnership and the way of harmonization in the country for a more effective project implementation.

I. 서론

지난 2015년 2030 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수립이후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SDGs는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environment) 그리고 거버넌스 이슈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17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뒤이어 나온 23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의 문제들을 망라한 SDGs는 시작부터 기대와 회의의 양면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15년 전 야심 차게 시작되었던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도 모두 달성되지 못한 결과를 두고 SDGs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MDGs 부분달성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이행수단의 부재이다. 이러한 비판과 회의의 목소리를 불식하고자 이행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이행되었던 MDGs와는 달리 2030개발의제는 그 자체의 이행수단 이외에도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회의의 결과물인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SDGs를 달성을 위한 재원규모를 사회개발에 매년 660억 달러가, 인프라 투자에 7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2015).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만으로 SDGs 달성과 개발도상국 발전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 이미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ODA논의에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논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대되는 가운데 민간재원의 국제개발협력 부문 참여 활성화 및 ODA와 결합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ing)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도 주목받

고 있다.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민간재원과 공적원조를 결합하는 혁신적인 재원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들이 주목 받고 있다.

사실 개발재원의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2002년 몬테레이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어 2008년 도하회의까지 계속해서 논의되었고, 2010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 바 있다. SDGs를 앞두고 2015년 7월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제 3차 개발재원동원 회의에서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대성되었다.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문서인 AAAA를 통해서 개발을 위한 재원의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AAAA는 개발재원을 금융적 수단(financial)과 비금융적 수단(non-financial)으로 구분하였고,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자금의 유입에 양태에 따라 국제와 국내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자금 출처에 따라 공공과 민간자금으로 구분하여 총 4종류의 금융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공공 금융의 대표적인 예로서 ODA는 ODA/GNI 0.7% 약속 달성이 강조되는 한편, 최빈국과 도서국 등 소외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¹⁾.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중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DRM)이 특히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재원과 관련하여 SDGs는 목표 17의 세부목표 17.1에서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표 17.1.1은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수익, 17.1.2는 국내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 비율로 확정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SDGs 이행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개발재원 논의는 국제민간-국제공공의 결합형태인 혼합금융을 중심으로 개발재원 확대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 사실 상 여러 보고서와 학술연구를 통해 개발재원의 효과적 확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내재원동원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AAA에서는 DRM을 조세/불법자금흐름/불법유출자금(국외횡령자금)/자연자원/위기관리 및 회복력/통합적 접근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DRM관련 논의는 이 중에서도 제3차 개발재원 회의 중 아디스 조세구상(Addis Tax Initiative, ATI)의 가입을 계기로 조세역량 강화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광범위한 DRM의 개념과 그에 따른 개발재원 동원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수영·오수현(2015) 참조.

고 있다.

게다가 AAAA 당시 국제적으로도 DRM을 지원하는 ODA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2016년 3월 OECD DAC 통계작성반 회의를 통해 DRM에 대해 공여자보고체계(Creditor Report System, CRS) 목적코드를 부과하여 2015년 통계부터 DRM 지원을 위한 ODA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ATI 가입을 계기로 조세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TA)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박수영·오수현 201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세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방향 또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DRM의 개념정의부터 실제 각국의 프로젝트 현황까지를 망라한 종합연구를 통해 향후 KOICA가 동 분야에서의 사업발굴 및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초연구로 기획되었다. 특히 조세분야에 한정되어있는 DRM논의를 AAAA에서 규정한 다각적인 이슈들까지 확대하여 그 개념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논의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국제적 논의를 파악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을 서술한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국내재원동원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내재원 동원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AAAA와 SDGs에서 다루고 있는 DRM 논의를 소개하고, DRM을 위해 조직되었거나 지원하고 있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을 파악한다. IV장에서는 실제 조세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공여기관들의 ODA를 통한 DRM 지원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KOICA의 DRM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결론으로는 향후 KOICA의 사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개발과 DRM: 조세 확대를 위한 이슈와 지원 분야

1. 개발재원과 DRM의 정의

개발재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과제일수 있을 만큼 새로운 재원과 새로운 금융방식들이 개발협력의 틀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개발재원은 일반적으로 그 재원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자금의 주체가 정부 및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표 1>과 같이 단순화해볼 수 있다.

<표 1> 개발재원의 구분

	국내	국외
공공	조세, 비과세수입	ODA, 기타 공적자금
민간	기업 활동, 저축	FDI, 자선재단기부금, 송금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6)

이 중 국내재원은 개발도상국의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내재원은 저축과 조세수입으로 귀결되어 측정될 수 있다(Lewis Jr., 1964). 이러한 자원 동원에 대한 다소 구체적이고 협의적인 견해는 다양한 결과를 가져 왔으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의미있는 경제 정책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발전(또는 개발)은 자본 형성(capital formation)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본 형성은 저축에 기인한다. 정부가 개발을 촉진함에 있어 선두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정부 저축(government saving)은 정부 조세수입으로, 이는 결국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 정책으로 귀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OECD(2010)은 DRM을 국내재원으로부터 창출하는 저축과 이를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투자에 분배되는 모든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장 광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좁은 의미의 DRM은 국내공공재원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G20는 DRM은 세금 또는 비과세수입(로열티, 라이선스, 부과금 또는 기타 수입)로부터 국내 자원으로 부터 정부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DRM은 지속 가능한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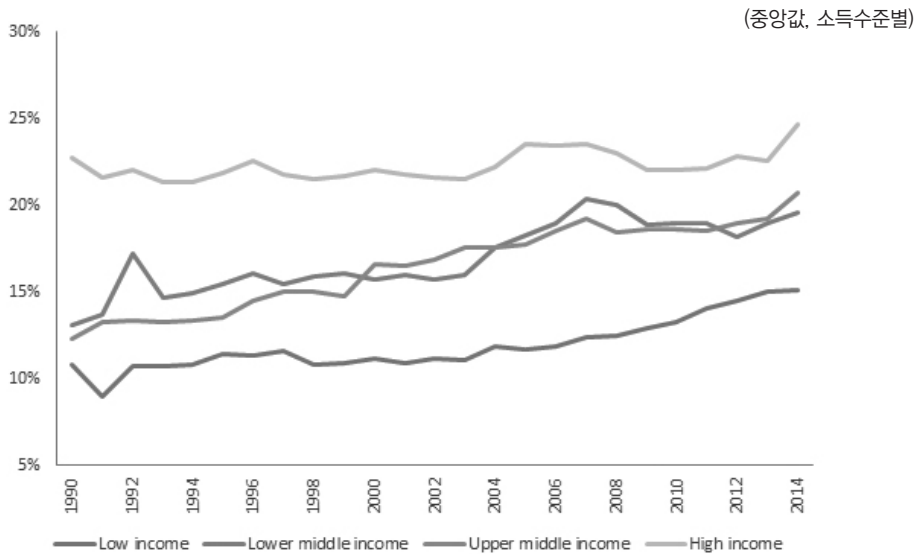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을 창출하고 소유권을 촉진하며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역시 세금 및 비과세재원 등 국내재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 수입의 창출로 규정하고 있다(EU Policy 2010). 미국원조청(USAID)는 DRM을 국가와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 따라 DRM은 반드시 새로운 세금이나 높은 세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감사역량의 강화를 통한 개선 노력과 또는 단순하게는 문서정리 및 전자화를 통해서 수입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USAID 2015).

이렇게 DRM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국내재원동원은 국내의 공공 및 민간 자원이 생산적인 투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저축이나 국내 기업 활동 및 기업의 저축을 포함한 국내민간자원 동원은 AAAA의 국내 공공 재원 취지와 공공부문의 수입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논의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수입을 증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출 부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두어, ‘국내공공재원 증대’로 DRM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DRM의 정의를 한정하는 것이 논의의 범주는 한정한다고 보기에는 국내공공재원 확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다음 장에서는 DRM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AAAA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조세 수입과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조세 수입은 실질적으로 증가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SDGs를 달성하고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14년 사이에 저소득 국가의 중앙정부 세수는 GDP 대비 4.3% 증가했지만, 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왔다(그림 1).

〈그림 1〉 조세수입 증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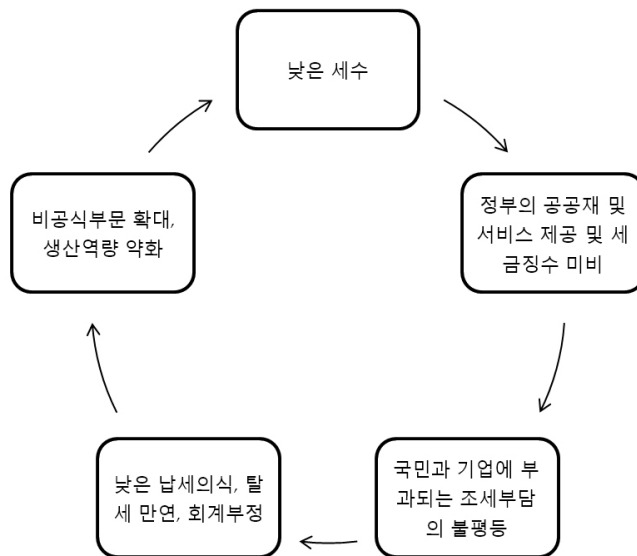
출처: GFI (2014:5)

낮은 세수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저하시켜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을 둔화시킨다. 이러한 공공재의 부족은 결국 조세저항과 탈세의 원인이 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세정책의 수립과 이행불능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조세당국은 저항이 큰 영역보다는 보다 세금을 걷기 쉬운 영역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결국 탈세로 인한 인센티브가 많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다시 세수가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낮은 세수의 함정(low revenue trap)’이 안정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수 증대를 희망하고 민간 부문은 납세 의무 최소화를 희망하는 주체로 특징지어지지만, 이러한 단순화는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재정부처(Ministry of Finance), 세무 당국(Rvenue Authority)과 산업 관련 부처들은 모두 다른 목적과 다른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는 세금 정책 실행 방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보통은 세금 정책 그 자체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갖는다. 세금 정책 수립 과정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재정부처가 설정한 세수입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세수입 목표는 표면적으로 거시 경제 성장 예측을 토대로 하는데, 일부 국가의 재정부처와 예산부서는 긍정적인 GDP 성장 예측을 산정하거나, 광범위한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한 높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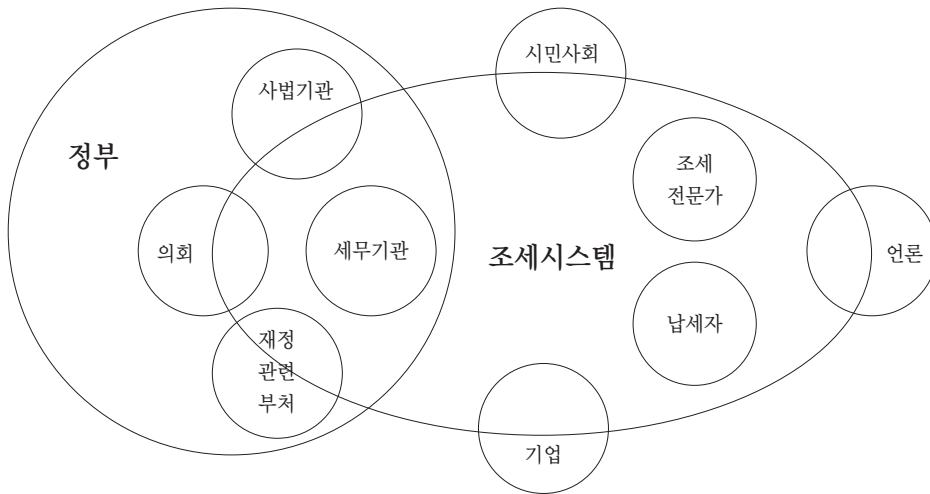
수 목표를 세우거나, 추가적 세수 증가를 위해 세수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타 세무당국이 재정 기획부와 함께 세수 목표와 세금 정책 형성 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 외에 산업관련 부처는 일반적으로 각자 자신의 부처가 속한 섹터(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세금우대 혜택 및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림 2〉 낮은 세수의 악순환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부당한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규칙에 따라 세금을 가능하면 빨리 납부하길 원한다. 게다가, 민간 부문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와 중소기업, 소기업 등 다양한 부문의 기업들을 포함해 그 자체로 광범위한 행위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국가기관은 국제 및 국내 시민 사회 기구, 정당, 지방 정부,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은 특성이 모두 다르며, 관심분야와 인센티브 또한 다르다.

〈그림 3〉 조세시스템의 다양한 주체들



출처: IMF et al. (2016)

이와 같이 조세개혁과 역량강화는 복잡하고 다층화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ODA의 목적은 국가가(또는 정부가) 안정, 성장, 굿 거버넌스 및 공정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필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강력한 환경, 조직 및 기술을 의미하는 견고한 '조세역량'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재정능력을 수습하기 위한 쉽고 빠른 해결책은 없다. 또한 최근의 개발 동향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이 성공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참여하고 지지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시스템에도 이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한다.

공공 부문에서 세무 기관은 세금 이슈만 담당하지만 일부 다른 조직은 세무 시스템 성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재무부, 세관 당국, 천연 자원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조세개혁은 이권의 추구, 관료적 관성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 등으로 기득권과 부정부패 등의 사회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DRM을 위한 역량 개발은 단순히 조세제도와 관련있는 공무원 교육이나 중앙정부 시스템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 의회, 사법부 등에 대한 조세활동 인지제고 및 역량강화 활동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조세제도의 개혁은 오랜 기간 동안 세금 설계(design of the tax), 세율, 행정 시스템 등 기술적 문제에 집중해왔다(Fjeldstad and Moore 2008). 조세 개혁은 주로 공여 주체, 특히 IMF에 의해 실시되어왔으며, 지금까지 a. 세금 설계 단순화, b. 보편적 소비세(broad-based consumption taxes) 도입, c. 조세 행정 개선에 집중되어왔다. 세금 설계 단순화는 기대만큼의 단순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직접세 개혁을 이끌어 냈으며, VAT의 광범위한 도입은 보편적 소비세 도입의 핵심이 되었다. 조세 행정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납세자 고유 식별 번호(unique identification numbers for taxpayers) 도입, 기존의 세금 유형 중점 시스템에서 지역 및 분야 중점으로의 조세 행정 및 시스템 개편, 고액 납세자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설치, 궁극적으로는 (부분)독립적인 세무 당국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 동시에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개혁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PFM 개혁은 빈곤감소전략에 따른 보다 나은 세수 확보와 분배를 목표로 재정 시스템 및 예산 편성 그리고 분기별 공공지출 계획의 향상을 도모해왔다.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도 세금은 거버넌스 강화와 효과적인 ‘공공 권한’ 형성과 관련해 연구 분야를 확장시켜왔다(IDS 2010). 세금과 “국가 형성”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민과 국내 기업에 과세 의무를 충분히 부과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버넌스(poor governance)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과 서유럽 국가 형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근거로,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재정 책임(fiscal contract)”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Prichard 2010a).

또한, 국가 역량 강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는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를 인상시키려는 단기적인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tax consensus(조세 합의)” 또는 “재정 책임”이라는 장기적 목표는 보다 공정한 세제와 납세의식 향상을 동반한 신뢰 형성과 정부 업무 내 투명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세금과 정부비용 지출 간의 관계를 주민들에게 명백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시행된다면 그림 2의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예산, 세수 목표에 이를 반영하고 세무 공무원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richard 2010b).

세수 증가와 관계없이 정부는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 투자, 고용과 산업 개발을 동시에 추구한다. 경제성장은 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는 시차가 존

제한다. 소규모 기업을 통해 세수를 얻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많은 양의 세수를 이 외의 기업들로부터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사실상 장기적으로 투자 및 많은 양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기업들에게 방해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만약 적절하게 계획된 목표가 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의 성장과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단시간 내에 확인하기는 어렵다(Easson and Zolt 2003).

또한 산업 개발과 천연자원 추출을 진행하는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에 주어지는 세금 인센티브 정책은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도 한다(Everest-Phillips 2008). 이렇게 제공된 비즈니스 기회에도 불구하고 MNEs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국제 재정 시스템을 빈번하게 활용한다. 공여국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재원 동원 역량의 강화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도국에서 수익을 빼내어 공여국의 조세 도피처와 비밀 관할권 (secrecy jurisdiction)으로 가져가는 주범이기도 하다²⁾. 또한, 이전가격조정과 회계 방식으로 인해 세금이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증가하며, 세금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윤이 축적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3. 공공 재정 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은 일반적으로 a. 재원 발생 b. 재원 배분 c. 지출 관리와 관계된 시스템에 중점을 둔다. PFM 측면에서 조세제도는 계획, 지불 그리고 행정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 관계와 인센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선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 예산 및 세금 정책을 형성하는 부처, 부서 및 타 기관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둘러싼 과정과 개인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정부 자체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세금 정책 실행을 개선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세정책은 빈곤 감소를 위한 공공재(poverty-reducing public goods)를 위한 지출 경로를 마련한다는 전반적인 목표와 의미 아래, 세수 증대는 가능한 한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다

2) <http://www.taxjustice.net>

양한 섹터 간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세정책은 WB와 IMF의 자문을 바탕으로 세법을 현대화 하려는 기술적인 문제로, 세제 개혁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산 절차는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와 Programme-based Budgeting(MTEF/PBB)를 도입하여 공공재정 관리의 개선을 이룬 반면, 다른 몇 국가들은 이를 사실상 표면적으로만 도입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예산 편성의 과정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미 책정된 예산 목표를 충족시킬 만큼의 금액을 세수 목표로 선정한다. 또한, 세금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관련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에 기초해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수 목표 설정(revenue target setting)절차는 세수 확보와 세수 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Ruiz et al. 2011).

재정부처의 영향력 하에서 세무당국 또는 조세부서는 일반적으로 부처에 의해 설정된 세수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세무징수 당국은 고액 납세자, 산업별 납세자와 같이 납세자 유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향상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한다(Danninger 2005). 우간다 Revenue Authority의 Commissioner General은 “[비공식 부문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회계감사와 기업 감사에 개인적인 돈과 인력을 투입해 세수를 확보하는 편이 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³⁾. 이는 세무당국이 가시적인 세수에 주목해야 함과 동시에 성장과 세수입 간 교환(trade-off) 관계를 의미하며, 형성된 세제에서 공정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조세 이슈가 ODA 지원 유형 중 일반예산지원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행 방법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PFM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공지출과 금융책임성(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EFA) 프레임워크의 26개 평가 지표 중 4개로 조세 및 재정관리와 연관되어 있다. 이 4개의 지표는 세수목표의 달성 여부, 납세자 의무의 투명성, 납세자 등록 및 조세 평가 방법의 효율성과 세금 징수 효율성에 관

3) <http://www.odi.org.uk/events/details.asp?id=2680&title=tax-end-aid-dependence-in-africa>

한 것이며, 이 중 세금 징수 효율성은 체납 세금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는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기에 조세 정책의 실질적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핵심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Eckardt and Schickinger 2011).

조세역량 강화에 관한 주요 공여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OECD(2013a)은 이를 위한 지원을 원조 유형(modality)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2> 조세지원 원조 활동의 종류

지원방식	내용
일반예산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GBS)	• ODA의 수원국 국고 직접지원 방식으로, 개별 국가 예·결산 집행절차에 따라 사용 • 수원국의 재정시스템의 수립/운영/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
섹터예산지원 (Sector Budget Support)	• 특정 섹터의 정책/전략을 지원하는 GBS 방식 •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재정관리 섹터 및 재정관련 기관 직접지원
바스켓 파이낸싱 (Basket Financing)	• 다수 공여기관들이 별도의 지정계정으로 예산을 모아 자금을 관리하고, 지정된 목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
기타 다주체 사업 (Other Multi-donor Project)	• 바스켓 파이낸싱 이외에 여러 공여기관들이 기타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을 지칭 • 다자기구의 신탁기금, 공동공여사업(joint donor project) 등이 포함
양자 지원 (Bilateral Stand-alone)	• 양자공여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조세관련 지원사업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 개발도상국 조세 전문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조세역량 지원 • 개발도상국-선진국 간 발생하는 조세회피, 채굴산업 관련 논의들에 대해 지역 공동대응체제 구축 동향
현물지원 (In-kind Support)	• 수원국 조세시스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교육 및 훈련, 물자 및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 • 조세정책, 공공재정정책관리 등에 대한 자문, 연수, 파견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출처: OECD(2013a)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일반예산지원은 원조지원금을 수원국 예산에 직접 지원하여 각국의 예산 시스템 안에서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OECD 2006). 이는 일반적으로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 수원국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원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공여국 입장에서는 수탁위험(fiduciary risk), 정책 협력 관계 및 재정운영 시스템의 안정

성을 고려해야 하는 위험(risk)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어 왔다. 또한 세입과 관련한 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교육, 보건, 인프라 등 당면한 복지과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일반예산지원을 통한 조세개혁 지원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공여기관 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여국들은 바스켓 파이낸싱을 통한 조세역량 강화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지원된 대표적인 사업이 우간다 국세청(Revenue Authority) 건립사업이 있다. 1991년 영국 DfID와 IMF의 공동 지원으로 설립된 우간다 국세청을 2006년에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가 다시 바스켓 파이낸싱하여 현대화를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OECD 2013a).

일반적인 ODA 양자 간 지원의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공여국은 수탁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획-관리-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공여국 조화(Harmonization)의 문제, 국가 전략과의 연계부문 등 원조효과성 원칙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 관련 분야에서의 개혁이나 제도 수립은 국가시스템 개혁의 일부로, 국별 특수성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한 환경을 가진 국가(예: 중남미)들의 조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남협력 및 기술협력 등 현물지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조세와 국가 형성(State-building)

기본적인 전제는 세수입에 의존하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책임감을 가지며, 정부 대응성(state responsiveness)을 위해 긍정적인 압력을 형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 정책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과 세수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투명성을 최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세금 정책이 어떻게 정부의 합법성을 증가 시키고, 공권력을 강화시키며, 민주화와 국내적 책임(domestic accountability)을 증진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 지출은 PFM 접근법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 내 공공 지출 시스템 또한 중요하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시스템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납세자의 돈이 납세자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타 방법들은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며, 세금 납부 준수(tax-compliance)와 관련해 의무감(sense of duty)을 형성

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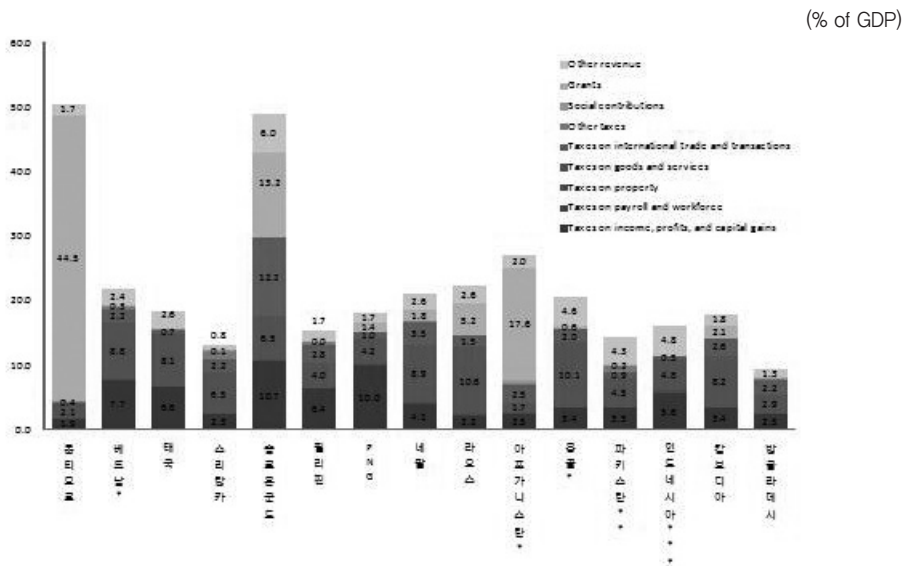
이외에도 세제와 국가형성 간의 관계는 원조 효과성 논의와 관련 있으며, 과도한 원조 의존성이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Eubank(2010)의 주장과 같이 소말리아의 해외원조 부적합성이 오히려 책임감 있는 정치적 기관으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말리아인들의 의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첨예한 논쟁이 있지만, 소말리아의 사례는 위의 주장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형성 관점에 따르면, 앞서 PFM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돼도 비공식 부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비공식 부문의 납세자를 재정책임시스템(fiscal contract)에 편입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정당성을 다른 납세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체제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세금망(tax net)안에서 소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 정책과 세제 개혁의 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국가에 적합한 세율에 대한 단일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절한 수준의 조세수입에 대한 해석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원 가능한 자원의 특성 및 지리적 위치 면에서 그 잠재력 역시 모두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DP 대비 15% 이하의 세율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Gaspar, Jaramillo and Wingender 2016). 이 경우 2013년 기준에서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ies, LICs)의 중간 세율(median tax ratio)이 약 13%였고, 이 중 16개의 LICs는 15%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세입은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적은 과세 기준을 가지고 있다(그림 4, 5, 6 참조). 예를 들어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농업 등 주로 비공식 분야 종사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식 부문에서 과세 표준을 확대하고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공식 경제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세금 개혁이 촉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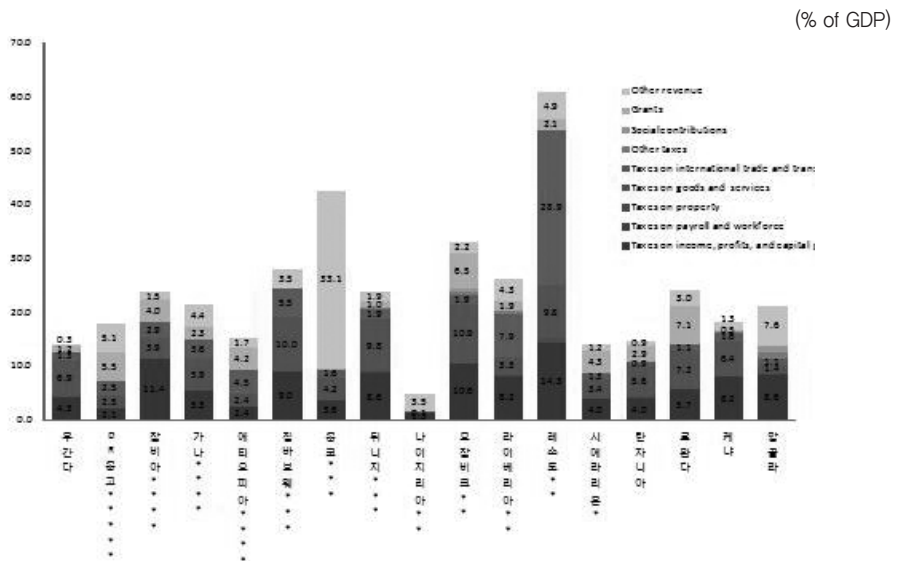
〈그림 4〉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요 개발도상국의 정부 수입: 2015년



* 2013년 기준; ** 2014년 기준 *** 2008년 기준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Revenue (접속일: 2017.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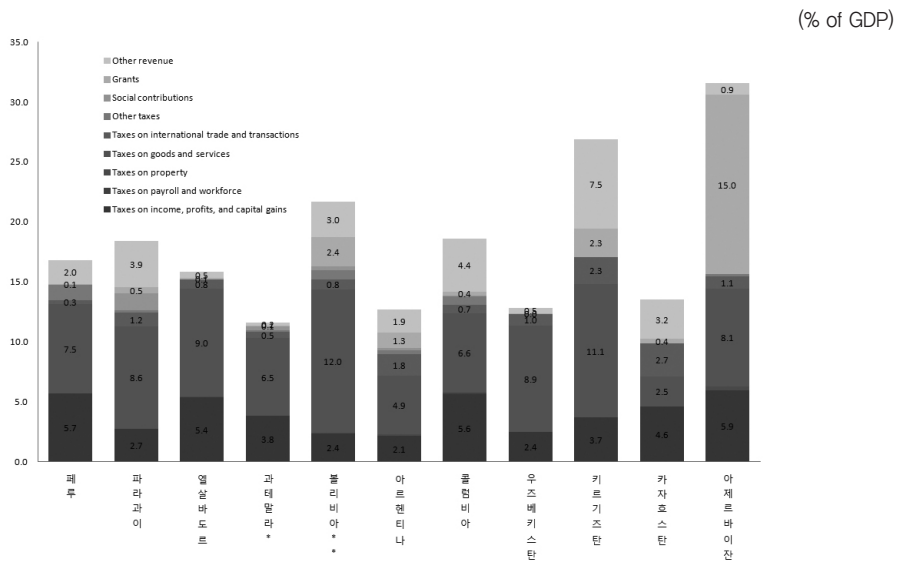
〈그림 5〉 아프리카 주요 개발도상국의 정부 수입: 2015년



* 2014년 기준; ** 2013년 기준; *** 2012년 기준; **** 2011년 기준; ***** 2010년 기준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Revenue (접속일: 2017.2.17)

〈그림 6〉 중남미 및 CIS 주요 개발도상국의 정부 수입: 2015년



* 2013년 기준; ** 2008년 기준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Revenue (접속일: 2017.2.17)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 성장 목표가 PFM 체계 하에서 달성되지 못한다면, 세수 당국의 단기 세수 목표는 국가 형성과 같이 모호한 목표는 지양하게 될 것이다. 국가 형성과 같은 대부분의 장기적 정부 목표는 모든 주요 행위자를 포함하고 재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협상과 같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지방세제(local taxation)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지방 세제는 책임성 향상 및 국민과 국가의 재정 책임이라는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재정 분권화 이외에도 지방세제는 부동산세, 토지가치세(land-valuation tax)와 같이 부가적인 재원을 동원할 것이며, 이는 지방 정부가 납세자의 선호도(preferences)에 보다 적합한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납세의식(tax morale)을 고취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Lockwood 2005). 그렇게 된다면, 이론상으로 납세자는 공공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세제로 인한 편익은 어떠한 재정 분권화가 정치적 분권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지방의 행정 및 재정역량, 수익 창출을 위해 적합한 재정 체계,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 중앙과 지방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적절한 지방세 법규의 존재 등과 같은 요인들에 달려있다(Booth 2011).

5. 세금, 민간 부문 개발과 성장

세율을 정하는 문제 이외에도 민간 부문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세제는 세금 인센티브와 세제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행정의 단순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 개발 증진과 산업 개발 및 산업 다변화 장려 그리고 사업 환경의 전반적인 향상에 있어 중요하다. 성장의 지속과 투자 장려 필요성은 정부로 하여금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수출 지향적 FDI를 위한 수출가공공단(Export-processing zones, EPZs)를 형성하게 한다. 이런 정책들이 고용, 수출을 증진하고 우선 분야 또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반면에 세금 이슈와 관련해 특정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웃국가들과 출혈 경쟁(race to bottom)을 하는 것과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MNEs는 항상 세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조세정책과 시스템은 MNEs의 투자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지역 간에 보다 강력한 세금 조화 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PFM 관련 이슈 중 몇 가지는 기업별로 다른 과세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세금, 기타 규제 당국(other regulatory authorities)과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최근 기업 조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부패와 결합한 다양한 집행 방식은 납세 의무를 저하시키며, 특히 국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공식 부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민간 부문의 납세 준수를 저하시킨다. 민간 부문의 경우 이질성이 매우 큰데, 부문별, 지역별로 기업의 크기와 종류, 경영방식 등이 모두 다르며, 각 기업이 직면한 경쟁의 정도와 목표 시장 또한 다르며,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이질성은 각각의 사업이 정부와 세금 정책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경제 효율성 뿐 아니라 더 넓게는 국가 형성이라는 목표와도 관련되어 있다.

민간 부문 및 산업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은 단순화에 집중되어 있다. 즉, 전반적으로 정책 단순화는 형식 단순화, 절차 간소화, 납부 횟수 감소 및 기업을 단순히 납세자가 아닌 고객으로 응대함으로써 납세 준수를 가능한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CT와 기술 접근성 증가는 납세 이행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의 효과는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다. 단순화의 측면에서 보면 단일세율(flat tax rate)이 공평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예를 들어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세금

지표는 일단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호의적이며, 이로 인해 일부는 조세 도피처에 이득을 주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하나로 모든 것에 적용(one-fit-all)”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Ruiz et al, 2011).

6. 채굴자원 세제(Extractive Resource Taxation)

오일, 가스, 광물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채굴자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수 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자원의 수요 급증은 자원의 국제 가격을 높이며, 이는 이윤을 증대시키고 지대(rents)의 가격을 높인다. 이를 통해 자원 개발 비용을 충당하며 이후 남은 이윤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굴자원 부문에서 FDI를 촉진시키고자 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자원의 가격이 낮았을 때, 기업과 국가 간에 불투명한 세수 처리로 인해 개발도상국과 그 국민들이 자원으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었다.

채굴자원에서 세수를 확보하고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재정 개혁을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재정 개혁에는 광산 및 석유 관련 법 재검토, 세금 인상, 특히 자원 붐으로 인한 막대한 소득과 때로는 기존 계약의 재협상을 포함한다. 또한 일부 국가는 세율을 높이는 시도를 해왔으나, 실제로 성공적인 예를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페루의 세금인상은 그 결과는 광산업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super-tax”라는 개념이 자원 부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동 방법은 명확하지 않으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특히 많은 기업들은 이미 투자 시 정부와 안정화 협정(Stabilization agreements)을 맺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기업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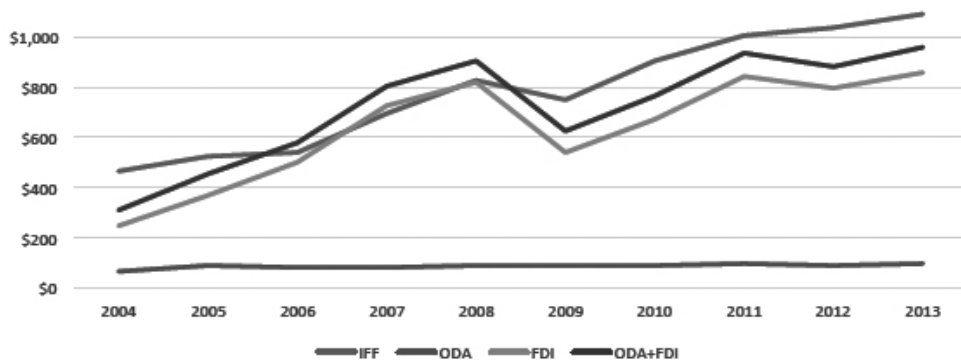
재정 개혁을 보완하는 것은 거버넌스 이슈를 다루는 방법과 계약 조건, 기업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 정부의 세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계약이 어떻게 설계되고 관리되는지, 초기 권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매각되는지, 어떻게 매각되는지 모두는 세수 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채굴자원 개발을 통해 이를 예상할 수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중요한 광물과 다른 천연 자원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투명성에 초점을 둔 정책 아젠다의 중요성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7. 국제 자본 세제(International Capital Taxation)

국내 세원이 국내 세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불법 자금 흐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과 조세 회피처 활용을 통해 세수 재원이 국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MNEs간의 이전가격조작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ODA 및 FDI 증가보다 IFFs의 증가에 더 주목해야 하며, 규모면에서도 이미 ODA와 FDI를 합한 것 이상임을 알 수 있다.

Ndikumana and Boyce (2008)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0개국에서 US\$ 4천200억이 유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좀 더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유출된 불법자금은 US\$ 8조에 육박하며(표 3), 이는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 전체 GDP의 4%에 해당한다(표 4).

〈그림 7〉 ODA, FDI, IFFs 추세



출처: GFI (2015:15)

물론 이러한 추정에 사용된 정확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개도국 내에서의 자본 유출 문제와 이러한 자본 유출이 개도국의 국내 자원 동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표 3〉 개발도상국 지역별 불법자금 유출 현황: 2004-2013

(단위: US\$ 십억)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평균 %
사하라 이남	32.5	51.9	56.4	77.0	78.6	85.0	78.0	74.3	66.7	74.6	675.0	8.6
아시아	174.6	191.9	209.1	236.5	277.5	277.1	381.7	361.1	456.7	482.0	3048.3	38.8
유럽	107.3	118.4	133.8	190.6	233.8	204.9	221.8	295.5	242.5	250.4	1998.9	25.5
중동 및 북아프리카	29.9	31.0	33.3	57.4	80.3	51.9	53.0	81.1	68.2	70.3	556.5	7.1
중남미	120.9	131.4	111.0	137.7	157.8	128.1	172.0	195.8	201.8	212.8	1569.3	20.0
개발도상국 전체	465.3	524.6	543.5	699.1	828.0	747.0	906.6	1007.7	1035.9	1090.1	7847.9	

출처: Kar and Spanjers (2015: 5).

〈표 4〉 개발도상국 GDP 대비 지역별 불법자금 유출 비중: 2004-2013

(단위: % of GDP)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사하라이남	5.4	7.3	6.9	8.0	7.1	8.1	6.1	5.2	4.4	4.7	6.1
아시아	5.0	4.7	4.3	3.9	3.8	3.4	4.0	3.2	3.6	3.5	3.8
유럽	6.2	5.5	5.2	5.8	5.8	6.4	6.0	6.8	5.5	5.4	5.9
중동 및 북아프리카	2.4	2.0	1.9	2.7	3.1	2.2	1.9	2.5	2.0	2.1	2.3
중남미	5.4	4.8	3.5	3.6	3.6	3.1	3.4	3.3	3.5	3.6	3.6
개발도상국 전체	5.0	4.7	4.1	4.3	4.2	4.0	4.0	3.8	3.7	3.7	4.0

출처: Kar and Spanjers (2015: 12).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자금 유출 중 일부는 합법적인 이익송금(profit repatriation)이지만, 일부는 MNEs에 의한 이전가격조작(transfer-pricing)과 관련되어 있다. MNEs는 세금이 낮은 조세 관할권(jurisdictions)에 지점을 세우고 제품을 조작된 이전가격을 통해 판매할 수 있어 이들이 실제

로 경제 행위를 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피하면서 모든 이득을 세금이 낮은 국가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다 나은 회계 감사와 상품 평가 역량, 개도국 조세 행정 서비스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이전가격조작 역시 감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크게 보면 이 모든 이슈들이 투명성의 확보와 연관된다. MNEs의 활동은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 뿐 아니라 국가 단위의 활동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이익과 손실 정도는 개발도상국과 보다 분명하게 연결되어있다. 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이윤이 발생되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 국가 조세 당국은 이를 통해 세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전가격조작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서 유출되는 국제 자금 흐름은 비밀 관할권(secretary jurisdiction)의 도움을 받는다. 비밀 관할권은 유출된 자금을 추적하고 환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이 그들의 국가에서 생성된 수입에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선진국 중 일부는 이러한 비밀 관할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장본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들이 참여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더 나은 투명성, 정보 교환 향상, 불공정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위한 EC의 2009년 회의의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Tax Matters”와 “세금과 개발”을 주제로 한 2010년 회의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 굿 거버넌스의 원칙을 증진하며, 개도국이 탈세와 불공정한 세금 관행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의하기도 하였다.

- 조세 협력에 대한 국제 기준 개발과 개도국의 특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한, OECD와 관련 UN 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
- 제3자와 함께 모든 개발 협력 협정에 조세 시스템 강화 및 조세 부문의 굿 거버넌스 원칙 관련 참조(specific reference)사항 포함
- 조세 부문의 굿 거버넌스 원칙을 준수한 개발도상국 대상의 기술 협력을 통해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and Exchange Agreements, TIEA) 및 DTC 실행
- 개도국 내 OECD transfer pricing 가이드라인 채택 및 실행
- 특히, 채굴 산업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을 위한 보고기준의 일환으로 국가별 보고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국내재원동원과 조세, 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들과 지원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세활동을 위시한 국내재원동원이 국가의 형성과 책무성, 공공재정 관리 역

량 및 MNEs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개발도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국내공공재원 동원이 지난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회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졌고, 이 후의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에서의 DRM과 모니터링

AAAA에서 DRM은 행동영역 중 가장 첫 번째로 정확히는 국내공공자원(Domestic public resources)로 명시되어 있다. 국내 공공 자원(재원)은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을 높이며, 거시 경제 안정성 관리에 필수 요소이다. 이는 비단 AAAA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약속과 책임 차원 뿐 아니라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동원의 핵심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다른 조세관련 협약이나 또는 ODA를 통한 개발 논의에서 진일보하여 AAAA는 건전한 정책,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조세확대, 조세행정 안정을 통한 추가 자원 창출과 이에 따르는 부패척결에 이르기까지 국가 거버넌스의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금융흐름 및 탈세를 방지하는 것과 국내자원 동원의 연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단일 국가 차원에서의 조세정책을 넘어 국제조세협력을 통한 수원국 국내재원동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AAAA가 국내재원동원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조세행정능력 강화를 통한 조세수입의 창출 또는 확대를 넘어 국제적인 조세협력을 통한 조세체계의 변화와 강화, 그 안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조세정책과 거버넌스의 변화

SDGs의 국제파트너십 및 이행수단에 관한 목표 17, 특히 세부목표 17.1과 함께 AAAA에서는 국내재원동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정책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para. 22 참조).

Para 22. 우리는 국제원조에 의해 적절하게 보충된 상당한 추가적 국내 공공 자원이 지속 가능발전 실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화되고 진보적인 조세 시스템, 개선된 세금 정책 및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통한 세입 행정 향상을 약속한다. 우리는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국가 상황에 맞추어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비공식분야를 공식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증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국내 세수 증대를 위해 국가별로 정의한 목표와 시기를 설정한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것이다.

AAAA에서는 조세시스템 개혁을 위해 국별 상황에 따라 과세기준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안에서 공식경제 규모를 증대하는 것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ODA로 지원함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세수 목표를 정하는 작업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 세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등을 행정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관리의 핵심이라 볼 수 있어,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는 특히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조세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체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MF 주도의 세수행정회계정보도구(Revenue Administration Fiscal Information Tool, RA-FIT)를 들 수 있다. RA-FIT는 각 국별로 조세 관련 행정조직, 납세자 식별 및 등록시스템, 세수의 통제와 사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지역 및 소득수준별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amgruber et al, 2015). 또한 조세행정진단도구(The Tax Administration Diagnostic Assessment Tool, TADAT)⁴⁾ EU, 독일, IMF,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World Bank가 개발한 평가도구로 국별 조세행정의 약점을 진단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TADAT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데, 이 평가의 목적이 국별 비교나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가 조세행정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 영역에 대해 근거주의(evidence-based)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OECD는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56개 선진국과 신흥경제의 조세행정에 관한 비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령하여 IMF의 재정투명성평가(Fiscal Transparency Evaluations, FTEs)⁵⁾, 재정투명성을 위한 글로벌 구상(Global Initiatives for Fiscal Transparency, GIFT)⁶⁾, 채굴 산업 구상(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주도의 이니셔티브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A를 전후하여 조세 정책 및 조세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 관

4) <http://www.tadat.org>

5) <http://www.imf.org/external/np/tad/trans/>

6) <http://www.fiscaltransparency.net/about/>

련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데이터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특히, IMF와 World Bank, UN, OECD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개되고 있다(IMF et al. 2011, 2015, 2016).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조체계가 완성되면 데이터 기반의 조세정책 및 시스템 변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불법 자금 흐름(Illicit Financial Flows)

AAAA는 국내재원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불법적인 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s, IFFs)을 줄이거나 근절하기로 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IFFs의 감소는 SDGs 세부 목표 16.4 “2030년까지 불법자금, 무기거래를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표 16.4.1에서도 “불법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총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Para 23. 우리는 국가 규제 강화 및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해 탈세 및 부정부패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불법자금흐름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불법자금흐름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탈세 기회를 줄이고 모든 조세 조약에 남용방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조세 당국이 정부와 기업 간의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 보장을 추구할 것을 포함하여 근원국과 목적국 내의 공개관행과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국내, 국제법과 정책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하고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다.

Para 24. 우리는 아프리카의 불법자금흐름에 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주목한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게도 유사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불법자금흐름 방지를 위해, 우리는 IMF, 세계은행, 유엔에게 모든 근원국과 목적국을 지원하는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적절한 국제기관과 지역 기구에 불법자금흐름의 규모와 구성의 추정치를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반테러리즘자금조달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의 효과적인 실행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을 파악, 평가, 해결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자금세탁방지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감소를 위한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를 장려할 것이다.

Para 25. 우리는 아직 유엔반부패협약에 비준 및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비준국에게 시행여부 검토를 장려한다. 우리는 본 협약이 부정부패 및 뇌물을 감지, 조사, 방지 및 대응하고, 부정부패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고발하며, 빼앗긴 자산을 그들의 본래 국가로 돌려주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자산 반환에 대한 좋은 선례를 만들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빼앗긴 자산 반환을 지지하는 유엔과 세계은행의 '자산 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와 기타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우리는 부정부패방지지역 협약이 갱신되고 비준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훔친 자산과 불법자금흐름의 해외 이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회피처를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기관, 기업 분야 및 공공 행정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규제프레임워크를 강화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제도를 강화 할 것이다.

IFFs는 탈세, 국제무역사기(mis-invoicing)를 포함한 금융자산의 국경 간 이동, 마약·문화재·의약품·천연자원의 밀매 등의 범죄행위, 부정부패 등이 포함되나, 실제로는 합의된 정의나 근절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불법자금흐름에 관한 보고서(The High Level Panel on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Africa 2014)에서는 '탈세 또는 적극적인 회피(evading or aggressively avoiding tax)⁷⁾'행위를 포함한 '세금남용'을 광의적 IFFs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IFFs를 측정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합의된' 도구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IFFs 자체가 투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IFFs가 다양한 불법(illicit) 행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Fs 중 일부를 측정하고 추적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 예로 World Bank의 '잔여모형(residual model)⁸⁾'을 들 수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실제로 사용한(used) 자금의 총액에서 유입된 자금의 총액을 빼고, 사용되는 자금보다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경우 그 부족분을 불법 자금흐름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전가격조작(trade mispricing 또는 transfer pricing manipulation)이나 가짜 송장(trade mis-invoicing)

7)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불법적 탈세(tax evasion)은 구분되나, 동 보고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불법(illicit)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ec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Files/iff_main_report_26feb_en.pdf 참조

8)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Bank_residual_model

을 불법자금 흐름의 프록시(proxy)로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한 글로벌 데이터로는 World Bank의 잔여모델과 무역 이전가격조작 모델을 결합한 Global Financial Integrity의 정기보고서나 Ndikumana(2014) 등 학술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FFs와 관련한 또 다른 접근은 특정 범죄 행위의 수익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UN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ODC)은 국제 불법 마약거래 및 기타 범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려는 조사를 World Bank와 UNDP의 지원 하에 실시해왔다. 그러나 범죄 자체의 금전화나 데이터 집약성의 한계로 인해 포괄적인 경향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와 관련한 IFFs의 규모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세계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등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부패와 관련한 데이터는 재원의 양보다는 부패인식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한 IFFs 추정에 한계를 가진다.

세금을 통해 IFFs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조세회피 및 탈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가 간(off-shore) 부의 이동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낮은 세율, 기밀 등의 이유로 이동된 개인 또는 기업의 이윤이 그 대상이다. 주로 특정 국가(지역 및 관할권)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등을 국제수지 통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이전가격조정이 모든 경우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며, 특히 국내법 차이에 의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래 상 규칙과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행위 자체가 IFFs에 정확히 해당되는 가, 그렇지 않는 가와는 별개로,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MNEs 금융계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MNEs 내부 구조와 국가 간 세율의 차이에 따라 부과되는 예상 세금과 실제로 납부된 세금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MNEs의 ‘세금없는 이윤의 이동’을 추적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Clausing 2016). 대표적인 예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BEPS) 프로젝트이다⁹⁾. BEPS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나, 소득이전을

9) 좀 더 자세한 내용은 IV. 4. 기타 조세관련 Initiative 참조.

통한 세원잠식의 가장 큰 피해국가가 개별 MNEs의 투자 및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개발도상국이라고 볼 때 BEPS 모니터링으로 추정된 조세회피 규모와 구글세로 대표되는 MNEs에 대한 세금부과는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 모니터링 기제로는 UN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 국제포럼(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금융활동 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등이 있다. 이들은 IFFs 및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반테러리즘지원(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자산회수 등에 관한 활동을 주로하고 있으며, 관련된 표준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 기준이 국가차원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 도난당한 자산 반환(Stolen Asset Recovery)

AAAA는 도난당한 자산의 반환의 중요성을 DRM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Para 25. 우리는 아직 유엔반부패협약에 비준 및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비준국에게 시행여부 검토를 장려한다. 우리는 본 협약이 부정부패 및 뇌물을 감지, 조사, 방지 및 대응하고, 부정부패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고발하며, 빼앗긴 자산을 그들의 본래 국가로 돌려주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자산 반환에 대한 좋은 선례를 만들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빼앗긴 자산 반환을 지지하는 유엔과 세계은행의 '자산 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와 기타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우리는 부정부패방지지역 협약이 갱신되고 비준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훔친 자산과 불법자금흐름의 해외 이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회피처를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기관, 기업 분야 및 공공 행정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규제프레임워크를 강화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제도를 강화 할 것이다.

특히 AAAA는 World Bank와 UNODC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도난자산회복(Stolen Asset Recovery, StAR) 구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StAR는 Asset Recovery Watch Database를 기반으로 관련 공개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도난당해 OECD 국가에서 숨겨진 불법 자산에 대한 조사 및 본국 송환에 관한 OECD 회원국의 OECD 서베이 결과와 함께 도난 자산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OECD 2014).

4. 조세 회피와 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AAAA에서 탈세 및 조세 회피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AAAA에서 명시한 조세회피 관련 문단은 다음과 같다.

Para 23. 우리는 국가 규제 강화 및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해 탈세 및 부정부패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불법자금흐름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불법자금흐름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탈세 기회를 줄이고 모든 조세 조약에 남용방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조세 당국이 정부와 기업 간의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 보장을 추구할 것을 포함하여 근원국과 목적국 내의 공개관행과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국내, 국제법과 정책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하고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다.

Para 27. 우리는 국제 조세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 역량 및 상황에 따라 투명성 강화, 적절한 정책 채택을 협력 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각 국가 조세당국에 보고; 권한 당국을 위한 수익 소유권 정보접근; 개발도상국, 특히 필요한 만큼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세당국 간의 조세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포함한다. 세금 혜택은 적절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로운 조세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 포럼에서 조세 혜택에 대한 자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Para 28. 우리는 국제 조세 협력에 대한 노력은 접근방식 및 범위에 있어 보편적이어야 하며, 모든 국가, 특히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의 서로 다른 수요와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본 작업에 있어 개발도상국 혹은 그들의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를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국가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어야 함을 요청한다. 우리는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 글로벌 포럼'의 작업을 포함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을 환영하며 BEPS에 있어 G20을 위한 OECD의 활동을 고려한다. 우리는 조세 행정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를 포함한 IMF의 노력과 OECD의 "국경 없는 세금 조사관" 이니셔티브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국가의 다른 수요에 기반하여 다자간, 지역 간, 양자 간 및 남남협력을 통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Para 29. 우리는 국제 조세 문제 관련 국가 조세당국 간의 포괄적 협력 및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조세협력에 관한 UN 전문가 위원회'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해당 위원회의 효과성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자원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일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는 회의의 빈도수를 연간 2 회로 증대할 것이며, 각 회의는 4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조세문제에 대한 정부 간 고려 증진의 관점에서 '조세문제 국제협력에 관한 특별회의'를 통해 경제 사회 이사회와 위원회의 참여를 늘릴 것이다. 위원회의 회원들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직접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분과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자발적 신탁 기금을 통해 위원회와 부속기구를 지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위원회 회원은 정부에 의 해 후보로 지목될 수 있으며 적절하고 공정한 지리적 분배를 반영하고, 다른 세금 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세금 정책 및 행정 전문가의 역량을 통해 행동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의 해 임명될 것이다.

국제 조세 협력은 양자 간 조세 조약 수, 위에 언급된 포럼 및 위원회 참여 및 지원, 다자간 협약 비준 등 많은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BEPS의 후속 조치와 같은 자발적 참여 포럼과 UN 체제 내에서의 광범위한 논의가 포함된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BEPS에 대한 OECD의 행동 계획에는 납 세자가 세무 계획을 세입 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의무 공개 제도에 대해 논의한 Action 12를 포함한 것이 좋은 예이다. EITI를 통해 EITI 참여 국가에서 운영되는 모든 채굴 산업체 기업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 또는 기타 자금에 대한 대중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IMF FTEs와 UNCAC의 동료 평가 및 데이터 제공을 통해 조세협력 기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한 평가는 어렵 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 MNEs가 활동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 가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국가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MNEs의 세금납부 지역을 조사하고, MNEs 가치 창출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구역에서 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BEPS 실천 계획에는 새로운 정보 표준과 시행을 위한 제안 절차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참여국가가 국내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와 보고서를 교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 국제포럼(Global Forum on Tax Purposes)은 96개 국가 및 지역이 이행을 약속한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OI)의 새로운 표준인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승인했다. 글로벌 포럼은 132개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지역에서 이미 합의된 투명성 및 정보 교환 표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동료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미 G20과 OECD는 OECD / G20 BEPS 행동 계획(Action Plan)의 실행 검토와 모니터링, BEPS 프로젝트 관련 이슈에 대한 표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BEPS 이행을 위한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를 마련했다. 이는 OECD 비회원국 및 지역을 OECD 회원국 및 G20 및 현재 BEPS 프로젝트의 회원국들과 같이 준회원 자격(Associate Status)을 부여하여 동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BEPS 프로젝트는 그 이행을 위해 15개의 행동계획을 제안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양국 간 조세 조약을 수정하지 않고는 이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조약에 따라 이러한 변경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효되고 있는 2,000여개 조세조약의 주체인 95개국이 BEPS를 양국 간 조약의 네트워크에 통합 할 수 있는 다자간 도구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¹⁰⁾.

양국 간 조세 조약 및 협력과 관련하여 AAAA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Para 23. 우리는 국가 규제 강화 및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해 탈세 및 부정부패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불법자금흐름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불법자금흐름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탈세 기회를 줄이고 모든 조세 조약에 남용방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조세당국이 정부와 기업 간의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 보장을 추구할 것을 포함하여 근원국과 목적국 내의 공개관행과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국내, 국제법과 정책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하고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다.

Para 27. 우리는 국제 조세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 역량 및 상황에 따라 투명성 강화, 적절한 정책 채택을 협력 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각 국가 조세당국에 보고; 권한 당국을 위한 수익 소유권 정보접근; 개발도상국, 특히 필요한 만큼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세당국 간의 조세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포함한다. 세금 혜택은 적절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로운 조세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 포럼에서 조세 혜택에 대한 자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10) BEPS inclusive framework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oecd.org/tax/beps-about.htm> 참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개발되어 BEPS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투자를 채널화하고 세율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서 시작된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양자 간 조세 조약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조항의 존재 또는 부재를 계량화하는 조세 조약에 대한 공식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AAAA는 세금 혜택이 FDI를 유치하는 등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에 적절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로운 조세관행(예: 무리한 세금 인센티브 및 면세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IMF, OECD, World Bank 및 UN는 G20의 요청에 따라 2015년 저소득 국가 투자에 대한 세제 상 인센티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를 출판하기도 했다(IMF et al, 2015). 또한 BEPS 행동 계획 5조 역시 해로운 세금 관행을 다루고 있는데, BEPS 동료 심사 과정에서 특허 상자(patent boxes) 등을 포함한 관행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결국 AAAA는 탈세 및 조세회피는 일부 선진국-MNEs 간의 조세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AAA는 포용적(inclusive) 협력체계의 구축과 국제 조세문제에 대한 조세 당국 간 자발적인 정책대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조세 역량강화

AAAA는 국내 자원 동원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Para 22. 우리는 국제원조에 의해 적절하게 보충된 상당한 추가적 국내 공공 자원이 지속 가능발전 실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화되고 진보적인 조세 시스템, 개선된 세금 정책 및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통한 세입 행정 향상을 약속한다. 우리는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국가 상황에 맞추어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비공식분야를 공식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증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국내 세수 증대를 위해 국가별로 정의한 목표와 시기를 설정한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지원 할 것이다.

Para 28. 우리는 국제 조세 협력에 대한 노력은 접근방식 및 범위에 있어 보편적이어야 하며, 모든 국가, 특히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의 서로 다른 수요와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본 작업에 있어 개발도상국 혹은 그들의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를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국가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어야 함을 요청한다. 우리는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 글로벌 포럼'의 작업을 포함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을 환영하며 BEPS에 있어 G20을 위한 OECD의 활동을 고려한다. 우리는 조세 행정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를 포함한 IMF의 노력과 OECD의 "국경 없는 세금 조사관" 이니셔티브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국가의 다른 수요에 기반하여 다자간, 지역 간, 양자 간 및 남남협력을 통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조세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2015년 AAAA 이전에는 OECD DAC ODA 통계 상 조세행정 및 DRM 관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AAAA와 SDGs 17.1 지원을 위한 아디스 조세구상(Addis Tax Initiative, ATI)의 발족과 회원국의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수단으로 OECD DAC는 공여자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 System)의 목적코드 15110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공공 재정 관리 범주 외에도 국내 자원 동원과 관련된 ODA 추적에 초점을 둔 코드 15114를 제안하여 2015년 이후 ODA를 동 코드에 따라 파악하고 있다.

아프리카 세무 행정 포럼(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ATAF)¹¹⁾중남미조세행정센터(Inter-American Center of Tax Administration, CIAT)¹²⁾와 같은 지역 조세협력 기관 역시 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과 그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MF는 개별 회원국(양국 간 기부자)의 조세관련 기술지원과 특히 수입(revenue)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국제 신탁 기금을 통해 다양한 공여기관들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독립적인 TADAT 이니셔티브 역시 다자간 신탁 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조세역량 강화와 관련한 활동 중 ATI는 조세역량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TI 서명국은 국내 자원을 동원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공여국들은 2020년까지 조세 및 DRM 분야에서 기술 협력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증액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G20는 IMF, OECD, UN 및 World Bank에 개발도상국이 BEPS 행동 계획 및 BEPS 프로젝트가

11) <http://www.ataftax.org/en/Pages/default.aspx>

12) <http://www.ciat.org/index.php/en.html>

적용되지 않는 국경 간 세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를 개발하도록 위임했다(IMF et al. 2015). UNDP와 OECD의 공동 프로젝트인 국경없는 세금 감사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 구상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세무 행정에 대한 세무 감사 지식과 기술을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포럼은 투명성과 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 표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알바니아, 콜롬비아, 가나, 모로코 및 필리핀 등 5개국에 AEOI 표준을 실행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하는 등 조세역량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

6. 기타

국내 공공 자원에 관한 AAAA의 관심은 대부분은 수입(revenue)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① 화석 연료 보조금

Para 31. 우리는 국가적 상황에 맞추어 조세 개혁과 가난하고 영향을 입은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개발에 있어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그들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해를 끼치는 보조금 단계적 철폐를 포함하여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화석 연료 소비의 환경 영향을 반영하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모니터링하려면 기존 수준의 연료 세금 및 효율적인 연료 세금(환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 세금)을 추정해야 한다. 150개국 이상의 화석 연료 제품을 다루는 IMF의 에너지 보조금 데이터베이스(Energy Subsidy Database)는 효율적인 세금과 기존 세금에 대한 비교데이터를 제공하여, GDP 단위당 화석 연료 보조금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OECD의 과세 에너지 사용 보고서 및 방법론은 OECD 및 기타 선별된 국가의 에너지 세금 구조 및 수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② 추출물 및 자원 부문

AAAA는 천연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Para 26. 천연 자원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들은 특정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천연자원의 부가 가치와 가공 및 생산적 다양화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또한 이러한 부분의 투자, 특히 채광 산업 투자와 관련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고민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그들의 부, 천연 자원 및 경제 활동에 있어 완전하고 영구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행사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의, 특히 채광 산업 내에서, 기업의 투명성 및 책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와 같은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주목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성공사례 공유와 공평하고 투명한 권리, 수익, 로열티 합의를 위한 계약 협상과 계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동료 학습과 역량강화 증진을 지속할 것이다.

천연자원과 관련한 경제활동이 주권 행사의 영역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채광산업 투자와 관련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MNEs들의 조세 회피, 탈세, 무리한 면세로 인한 경쟁(race to bottom)을 경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의 활동은 채굴산업 투명성과 관련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 부국을 위한 재정 투명성 규정(Fiscal Transparency Code)를 포함하여 EITI 및 IMF FTEs의 서베이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EITI 회원국은 경과 보고서를 통해 EITI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동 평가에는 자원 협약과 이행을 중심으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국제기구 및 양자 간 공여국의 지원이 역량개발과 동료 학습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

③ 비전염성 질병

AAAA에서는 조세 정책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조세정책의 영향력과 이러한 조세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Para 32.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 전염성 질병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에 주목한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소규모 도서국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우리는 예방 및 규제에 관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담배에 대한 가격 및 세제조치가 담배 소비와 보건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국가들에게 개발재원마련을 위한 수입원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담배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중요한 측정 기준에는 담배 소매가 대비 세금 분배와 담배세에 의해 실현된 수입이 포함된다. WHO는 담배 가격 및 세금에 대한 2년 단위의 글로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담배세 수입 증대; 건강 목적 또는 담배 통제를 위해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HO는 또한 담배세와 가격뿐만 아니라 수출, 수입, 생산 및 불법 거래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국가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WHO는 담배 통제에 관한 기본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증가시키는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 담배 사용은 줄이면서 국가의 수입(revenue)은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A에서는 국내 공공재원 동원의 이슈를 정부 수입의 확대로 보고 있으며, 이는 조세행정과 거버넌스의 변화, 조세역량강화, 불법자금 흐름의 차단, 도난 자산 환수, 조세회피와 탈세 근절을 통해 이행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를 위해 국제 조세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용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모든 탈법적인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위와 현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은 국별 조세활동으로 측정되고 모니터링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IV. 조세개혁과 국제조세협력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는 국내 공공 자원의 동원이 지속 가능발전과 SDGs 달성에 중요함”을 인식한 AAAA이후 강력한 조세 시스템이 개발의 중심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스템구축을 위해 외부지원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력한 조세수립 실적은 DRM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핵심이지만, 단기간의 조세확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세 및 비과세 수입의 총액은 S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포함하여 인프라, 사회 및 기타 지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DRM 활동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공여국의 정책에 따라 비용 변동 예측 불가능한 원조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켜 거시경제 안정성과 회복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기 수익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나 전체 조세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세금 사면 제공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적 활동을 손상시키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 사이에 불신의 악순환이 심화된다.

또한 조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국가 거버넌스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분배 선호도는 국가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국가는 수입과 지출을 연동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과세 문제가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IMF 2014a). 세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은 동원되는 수익과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Ali, Fjeldstad and Sjursen 2014). 결국 취약한 조세 시스템 안에서 정부는 납세자를 신뢰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세금을 통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악순환이 생겨난다. 따라서 조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정부와 시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공동 관심을 촉진하고 국가 역량의 다른 측면에서 개선을 촉진할 수 있으며, 조세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OECD 2010). 최근의 논의들은 국제 조세 시스템의 합법성이 국제적 맥락에서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장에서는 AAAA와 SDGs의 이행을 위한 국

제조세협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경없는 조세감시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

TIWB는 2012년 미국 및 독일 주도로 창설된 “금융지원단(Financial Service Corps, FSCs)”를 모태로 하는데 FSCs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또는 공공부문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구성되었다. 이후 2012년 5월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는 OECD의 핵심적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조세와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되었다.

TIWB는 개발도상국들이 MNEs 세무조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현직 EH는 전직 세무조사 공무원을 파견하여 개발도상국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OECD(2015)에 따르면 TIWB는 a. 자발적 조세순응 향상하고 조세저항을 근절하며; b. 투자 환경과 세무조사 기술을 향상하며; c. 국가-사회 간 신뢰관계를 강화하며; d. 국제 조세 대화를 촉진하고; e. 수입(revenue)을 증대하고; f. 세무조사의 질과 일관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2015년 개발재원회의를 통해 UNDP와 OECD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운영되게 되었으며, UNDP의 참여를 통해 재정적 안정 뿐 만 아니라 OECD의 조세영역 전문성과 UNDP의 개발도상국 국가주도의 전략수립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TIWB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전체에 걸쳐 약 US\$ 185백만 이상의 추가적인 수입(revenue)을 창출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표 5).

〈표 5〉 TIWB의 활동과 수입(revenue)의 증가 내역

국가	내용
알바니아	이탈리아의 TIWB 지원으로 이전가격 조정이 세전 수입의 7%에 달함
콜롬비아	세수 확대: US\$5.83백만(2012) → US\$33백만(2014)
케냐	세수 확대: US\$20백만(2012) → US\$107백만(2014)
세네갈	감사 조정으로 2015년 추가수입 US\$12.3백만 발생
베트남	세수 확대: US\$3.9백만(2012) → US\$40백만(2014)

잠비아	세수 확대: US\$3,22백만(2012) → US\$7,91백만(2014)
짐바브웨	세수 확대: US\$160백만(2014) → US\$211백만(2015)

출처: Saenz and Ryding (2016:17)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TIWB의 활동이 세수확대의 절대적인 요인일 수는 없겠으나, 총 12건의 시범사업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시작되고 있는 등 TIWB의 활동은 강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TIWB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양자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르완다, 네덜란드-가나, 프랑스-세네갈 등의 파트너십은 향후 한국이 TIWB를 활용한 조세 역량 강화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2. 아디스 조세 구상(Addis Tax Initiative, ATI)

유일한 예는 아니지만 이러한 약속이 이행된 예 중 하나가 아디스 조세 구상(Addis Tax Initiatives, ATI)이다. 2015년 7월 수립된 ATI는 2020년까지 조세부문 기술 협력에 대한 지원을 2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SDGs를 달성하고 이를 통한 포용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 동원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표 6〉 Addis Tax Initiative 가입 회원국

회원국	협력국	회원기관
호주, 벨기에, 캐나다, EC,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네시아,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필리핀,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아프리카 조세행정 포럼(ATAF), 게이츠재단, 영연방조세행정가 협회(CATA), 조세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 중남미 조세행정센터(CIAT), IMF, OECD, 세계은행

출처: ATI 사무국 홈페이지(접속일: 2016.12.31)

한국도 개발재원회의 기간 동안 ATI 공식 가입을 선언하여 18개 회원국의 일원이 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I회원은 크게 3그룹으로 구분되는데 공여국 그룹인 회원국과

수원국 그룹인 협력국, 그리고 지역 조세행정 기관 및 게이트즈재단과 같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회원기관으로 분류된다. 회원국 구성에서 특이할 점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협력국이 아프리카 국가들도 구성되어있어 몬테레이 이후 조세 및 국내재원동원에 관한 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늠케 한다.

ATI의 이행과제¹³⁾는 우선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국내재원 동원과 조세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세행정 현대화 및 조세행정 역량강화 등 양자 간 공여활동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와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AEOI 지원 등이 세부과제로 설정되었다. 이에 대해 협력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조세개혁을 이행하며, 국제사회의 조세행정 진단도구인 TADAT을 사용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여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가 MNEs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BEPS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히 개발협력의 차원을 넘어 선진국 재정부처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관련 부처, 그리고 세무당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함으로 정책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관점에서 이행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7〉 Addis Tax Initiative 이행과제

이행과제	세부과제	입증방법
1. 수원국의 국내재원동원과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세분야 지원 2배 확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이니셔티브 이행 및 과세정보공유(AEOI) 지원 • 천연자원채굴 산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과세제도 수립 지원 • 조세회피 및 불법자금 방지, 불법자금추적 활동지원 • 조세행정 현대화 및 조세행정 역량강화 전반	• OECD DAC CRS 코드 상 조세 분야 원조를 신규 15114 (더미 코드)로 구분 보고. • OECD 정보 기반 ATI 회원국들 간 정보공유 및 홈페이지 게시
2. 개도국은 국내재원동원을 위해 정치적 의지를 갖고 국내개선 조치들을 이행	• 개도국 국내 조세개혁 이행	• 자체 지표 및 목표 설정 • 조세제도 현황 점검 * TADAT 실시

13) 자세한 내용은 〈표 7〉와 ATI 홈페이지 참조.

3. 공여국 및 개도국 모두 정책일관성(PCD)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내 정책을 개선	• 공여국 국내이행과제로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를 위한 노력 실시	• 정성결과보고서(narrative report) 제출
---	---	--------------------------------

출처: ATI 사무국 홈페이지(접속일: 2016.12.31)

ATI는 2016년 10월 제2차 회원국 회의에서 OECD DAC의 DRM 관련 활동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2015 ATI 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를 청취한 바 있으며, 2015년 공여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2배 증액의 기준이 될 기초선(baseline)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초선의 확정으로 약속했던 2배 증액 노력은 각 국별로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도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함과 동시에 아시아의 유일한 공여국으로서 동 지역에서의 조세 관련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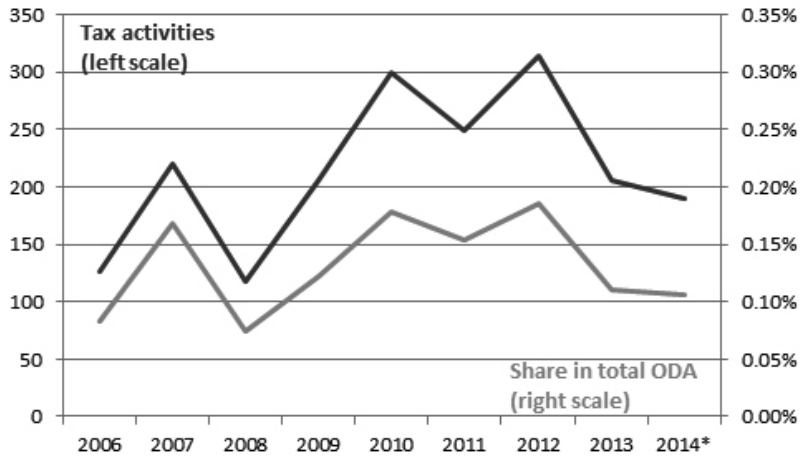
3. OECD DAC의 DRM 측정

조세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우선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정확한 통계에 표준이 없었다. OECD 개발 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CRS코드에는 2016년 말까지 DRM에 관한 새로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2015년 이후 데이터부터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Runde et al. (2014)는 2014년 기준으로는 전체 ODA의 조세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약 0.12%만이 조세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그림 8).

세금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 정부의 책임이지만 국제조세협력과 국제적 지원은 a.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 조성: 시민사회의 참여와 정치적 약속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사회는 정부 간 고위급 정책 대화 및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입증된 대안을 제시; b. 효과적인 정책, 제도 및 조직 구축: 조세 정책, 법령 및 행정 전반에 관한 기술적 협조 및 기술 지원; c. 리더십과 전문 기술을 포함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해갈 수 있다. 이러한 영역들은 CRS 목적코드 상 151** 그룹과 16010, 331**, 41010, 43030, 51010에 분산되어 표기되어왔다.

〈그림 8〉 “조세와 개발” 관련 ODA 약정액

(US\$백만, 2014 기준)



출처: OECD(2015)

이에 2016년 3월 DAC 개발재원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에서는 SDGs 17.1을 모니터링 하고 ATI가 회원국들의 약속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식으로 DRM에 대한 CRS 목적코드를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014년 데이터에 대해 더미코드를 자발적으로 부여해 기초데이터를 만들고 이후, 2015년 집행액에 대해 15114를 부여하여 최초로 보고되었다.

〈표 8〉 DRM 지원 ODA 현황

(US\$ 1,000/Current price)

	약정						집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호주	48,551	47,178	53,329	36,196	8,827	10	10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2,650	4,562	—	181	2,650	6,656	2,219
캐나다	10,826	20,231	5,496	41,684	3,368	4,468	7,316
체코	—	—	—	11	—	18	18

덴마크	15,298	4,127	—	1,650	63,259	6,988	7,124
EU	—	—	—	6,638	9,409	—	1,664
핀란드	—	139	—	—	—	7,127	4,538
프랑스	—	—	5,803	—	—	5,811	5,688
독일	11,362	76,966	15,0532	2,098	276	52,262	15,119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10	10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4	—	266	265	—	—
이탈리아	21	122	388	119	—	1,226	1,226
일본	—	1,682	38,106	3,796	—	2,909	2,877
한국	4,263	6,538	3,055	9,563	4,163	351	3,490
룩셈부르크	—	—	—	—	663	478	478
네덜란드	117	—	1,285	1,960	1,403	630	2,198
뉴질랜드	546	2,270	194	56	14,516	—	2,176
노르웨이	3,929	17,389	18,190	2,133	14,113	14,094	13,734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2,144	1,307	789	111	118	—	—
슬로바키아	—	—	—	13	13	23	23
슬로베니아	—	—	—	41	123	—	—
스페인	741	2,150	161	—	1,317	55	37
스웨덴	42	3,151	210	7,253	17,412	3,749	8,846
스위스	4,321	7,088	21	7,731	2,215	7,809	5,750
영국	7,403	1,726	1,308	5,497	1,766	61,040	40,825
미국	6,427	57,046	7,119	67,047	20,441	75,369	36,788
합계	226,640	253,677	285,986	199,871	166,319	251,084	162,155

출처: OECD Data Collection Units 2017 내부문서

그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현재 전체 약 US\$ 1.6억 정도가 DRM을 지원하는 ODA로 분류되었으며, 한국은 US\$ 3.5백만을 지원하여 전체 OECD DAC 회원국 중 11번째로 많은 ODA를 DRM 영역에 지원하였다. 조세 역량 강화 부문에서 전통적인 공여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미국은 각각 US\$ 4천만, US\$ 3.6천만을 공여하여 양국의 합이 전체 DRM ODA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파악된 공여국의 DRM ODA 자료는 ATI의 이행과제를 모니터링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향후 국제사회의 조세관련 ODA 내용을 점검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4. 기타 조세관련 Initiatives

국제 조세 개혁은 국내 조세 시스템 발전과 더 나아가 국내재원동원에 필수 요소이다. 국제 조세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세금 회피 및 탈세 기회와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BEPS)

이러한 가운데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분야는 G20와 OECD 주도의 BEPS 프로젝트이다. BEPS는 MNEs가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다. G20는 2015년 11월 터키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BEPS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 BEPS는 최소 기준, 공통 접근, 모범 관행·권고안·지침 등의 조치 사항으로 분류되며 조치 사항별로 이행 강제력에 차이가 있다. 이 중 최소 기준은 G20과 OECD 회원 40개국에 대해 강제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최소 기준에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된다.

□ 도난 자산 회수(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StAR) 구상

World Bank Group과 UNODC가 협력하여 불법자금의 피난처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서 불법수익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은닉 자산의 체계적이고 시

의적절한 회수를 위해 개발도상국 및 금융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자산회수와 관련한 정책분석, 역량구축 연수 등도 제공한다.

□ 채굴산업투명성구상(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천연자원의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산업의 투명성을 개선하여 동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혜택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UN은 2000년부터 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있도록 하여 UNCAC를 2003년 10월 채택하였다.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설립하거나 선거 및 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패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며, 부패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국제자금세탁방지(FATF)

FATF는 정부 간 기구로서,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1989년 파리에서의 G7 정상 회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될 당시에는 자금세탁척결을 위한 도구 개발 및 검증 임무를 맡았으나, 2001년 10월 테러금융척결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권한을 확장하였다. 현재 이 기구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관련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각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며, 비협조국에 대해 제재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 국제 조세협력에 관한 UN 전문가 위원회

UN ECOSOC의 산하기구로 국가 간 조세협력 문제를 다루고 국제조세이슈에 관련 한 적절한 평가나 제언, 권고한다. 특히 개도국의 입장에서 조세문제를 논의하는 특징이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U N 모델이중과세협약(U N M o d e 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양자 간 조세 조약 협상 매뉴얼(Manual for the

Negotiation of Bilateral Tax Treati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관련하여 검토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다

□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 글로벌 포럼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교환 강화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주로 조세 피난처(tax haven) 문제를 다루던 OECD 산하 글로벌포럼을 2009년 9월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독립기구로 개편한 것이 다. 조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합의 된 투명성 및 정보 교환 기준 이행을 보장하는 국제기구로서, 강화된 동료검토 과정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약속한 기준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EC는 이전가격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추출 산업의 보고 투명성과 같은 EU 정책과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관세기구는 회원국 세관 당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지역 개발 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s)은 다양한 수준의 세무 정책 및 행정 문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 작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 조세기구 (Regional Tax Organizations, RTOs)는 지역 내 조세 역량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V. DRM 지원 사업 사례분석

Morrissey(2013)등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원조가 DRM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지원 방식에 따라 주요 공여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세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다.

〈표 9〉 영국, 독일, 일본의 조세분야 사업 사례

기관	사업 내용
영국 DfID	• 세입기관(Revenue Authority) 설립 및 현대화 – 르완다(1997–2010), 우간다(1991–2000), 잠비아(1995–1999) • 조세개혁 – 가나 부가가치세 도입(1992–95, 1997–2000) • 불법자금 환수 및 동결
독일 GIZ	• 기술협력 형태의 지원 위주로 조세정책 및 전략개발, 조세행정 교육훈련 지원 등 • 조세행정 현대화 – 탄자니아 조세청 개혁, iTAX 시스템 구축(1998–2007), 네팔 국세청 지원(2009–2012) • 조세 개혁 – 크로아티아 조세법 개정 및 조세행정기관 개혁
일본 JICA	• 조세행정 현대화 – 몽골 조세행정 현대화(1998–2008), 인도네시아 조세행정현대화 기술협력(2007–2009) • 조세 분야 인적자원 역량강화 – 캄보디아*2007–2010), 말레이시아(2007–2010), 베트남(2008–2011), 중국(2008–2011), 우즈베키스탄(2008–2011)

출처: 박명지(2011:37–54)와 김은주(2016)

〈표 9〉에서 알 수 있듯, 2010년을 전후로 조세관련 사업들은 조세행정 현대화와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단순히 ITC 기술 기반의 인프라 제공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혁, 관련 법 정비 및 납세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국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장에서는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조세개혁과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공여국으로서 한국에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르완다의 조세개혁¹⁴⁾

르완다는 1994년 분쟁이 종식된 후 몇 차례의 개혁 기간을 거쳤다. 정부수입(revenue)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7년 르완다 국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RRA)이 설립되었다. 2001년에는 VAT를 도입하는 한편, 2003년 RRA는 세금 기반 조직에서 기능 기반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동시에 RRA 핵심 프로세스를 부분적으로 통합한 e-Tax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했다. 2010년 이후 조세개혁은 주로 관세 개혁과 수입 관세 의존도를 낮추는 등 지역 통합 및 광범위한 무역 협정 준수에 집중되었다. 주요 관세 개혁에는 르완다 전자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시스템의 구현, 국경/세관 및 동아프리카 커뮤니티(East African Community) 단일 관세 지역 프로젝트 연장 등이 포함되었다(Kloede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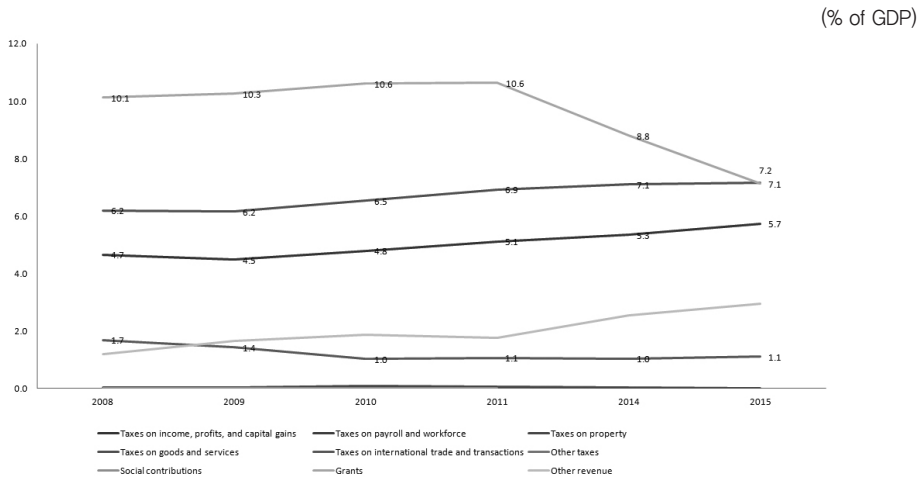
조세 입법과 관련하여 2005년 새로운 소득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소규모 및 중소기업 납세자를 위한 특별 세법이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강제 징수 및 감사를 강화하고 항소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더 큰 권한과 법적 자원을 제공하는 법안이 정비되었다. 2006년에는 청량음료, 알코올, 담배, 전화사용, 연료 및 차량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이 기간 동안 조세 행정 개혁은 새로운 기능 조직의 완전한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RRA는 상업적 비거주자 세금 관리 프로그램인 SIGTAS(Standardized Integrated Government Tax Administration System)를 시행했다. 또한 RRA는 납세자 교육을 강화하고 콜센터를 설립했으며, 준법 시행 강화, 감사 개선, 항소 및 탈세 벌칙에 대한 추가 노력이 이루어졌다. VAT 징수를 강화하기위한 최근의 개혁은 VAT 등록 납세자가 사용하는 전자 청구 시스템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RRA는 2014년 이래 30개 지구를 대신하여 지방 분권화된 세금을 징수했으며 이는 지방세 징수의 효과를 강화하고 따라서 지역 자원의 추가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총 세수는 약 절반으로 증가했다. 이 세수 총액의 전반적인 증가는 수입 관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는데 실제로 무역세는 2007년 세수입의 약 12%에서 2013년 6.8%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세수 증가는 입법 강화

14) 르완다 사례는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10)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그림 9〉 르완다의 정부 수입구조 변화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Revenue (접속일: 2017.2.17)

와 행정 강화, 등록 증대를 포함한 확대된 세금 기반으로 인해 발생했다. 납세자의 증가 및 준수 향상. 등록 된 납세자(급여 직원 제외)의 모든 범주는 이익 증가 세금(또는 법인 소득세) 부문에 등록 된 사람들의 4배로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표 10).

〈표 10〉 르완다 납세자 신고 현황

(단위: 명)

	2007	2013	변화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자 수	3,621	11,702	223%
원천징수(PAYE)	7,323	20,718	183%
수익세(Profit Tax)	15,876	100,014	530%

출처: Rwanda Revenue Authority (2007, 2013) Annual Report (<http://www.rra.gov.rw/>)

VAT 세율 상승 등 성과 지표는 지속적이고 중요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Appendix 2 참조). VAT 세율의 상승은 개발 목적, 특히 건강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내 자원 동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 르완다의 모든 보건 지출의 약 53%가 보건을 목적으로 한 외부 자원이었지만 2013년 기준 38%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보건 지출이 US\$

32에서 US\$70로 두 배가 증가했다. 보건분야의 정부지출은 GDP의 3.2%에서 6.5%로 확대되었다. 이는 DRM 확대를 통해 정부가 자체적인 복지예산에 배분을 하게 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세개혁 기간 동안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국들과 공여국들은 조세 정책 및 조세 행정 개혁에 장·단기간에 걸쳐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정책뿐만 아니라 VAT 확립, 납세자 식별 번호 (TIN) 설정, 비 납부자 파악을 위한 납세자 레지스트리 확장, 납세자 세분화 도입, 대형 납세자 사무소(Large Taxpayer Office) 개설 및 위험 관리 및 위험 기반 감사 등에 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표 11〉 공여국 전체와 영국의 르완다 지원 순 ODA

(단위: US\$ million)

년도	공여국 전체	영국	영국 ODA 비중
1996	465.31	19.28	4.1%
1997	229.73	10.04	4.4%
1998	350.13	20.59	5.9%
1999	373.14	26.53	7.1%
2000	321.46	52.67	16.4%
2001	304.66	36.76	12.1%
2002	359.59	52.63	14.6%
2003	335.96	42.88	12.8%
2004	491.14	58.18	11.8%
2005	572.71	81.95	14.3%
2006	605.39	95.4	15.8%
2007	720.06	94.94	13.2%
2008	935.5	99.88	10.7%
2009	934.25	89.85	9.6%
2010	1,033.09	106.17	10.3%
2011	1,262.83	135.57	10.7%

2012	878.61	44.76	5.1%
2013	1,086.32	161.65	14.9%
2014	1,035.07	79.07	7.6%
2015	1,081.72	154.76	14.3%

출처: OECD Statistics (접속일: 2017.1.1.)

실제로 RRA 창설 이전에 장기간 고문 변호사가 르완다에 배치되어 활동을 하기도 했다. 영국 지원의 이 고문은 정책 조언뿐만 아니라 RRA의 설계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는데, ODA 지원에 대한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르완다와 영국의 장기간에 걸친 자문과 지원, 그리고 RRA 국장과 영국 국세청 세무 사무총장 간의 지속적인 멘토링 관계를 들 수 있다.

〈표 12〉 영국의 르완다 국세청 지원 ODA

(단위: US\$ million)

년도	지원액	사업 내용
2002	2,913	• 르완다국세청(RRA) 지원 Phase 4
2003	2,913	
2004	0,387	
2005	3,497	
2006	1,693	
2007	10,449	• 르완다국세청(RRA) 지원 Phase 4 (3,102) • 르완다국세청(RRA) 지원 Phase 5 (7,347)
2008	1,809	• 르완다국세청(RRA) 지원 Phase 5
2009	1,561	
2010	2,316	• World Bank와 PFM 바스켓 펀드 구축(총액: US\$ 16,195) – Component 4: Domestic Revenue Generation
2011	2,406	
2012	2,406	
2013	1,954	

출처: OECD Statistics (접속일: 2017.1.1.)

영국은 르완다 국세청 지원이 2009년 Phase 5를 끝으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World Bank와 공공재정관리를 주요 목표로 하는 바스켓 펀드를 구축하여 2013년까지 지원을 이어왔다(표 12). 르완다의 조세개혁 사례는 수원국의 개혁의지와 양자 간 ODA 지원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관계의 설정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파라과이¹⁵⁾

파라과이의 전반적인 재정 및 경제 상황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었다. 경제는 침체되었고 구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해 국가 부채와 해외 부채가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까지 총 징수액은 GDP의 8.8%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개혁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2004년 파라과이 정부는 법인 세율을 30%에서 10%로 낮추었으며, 경제 부문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던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세도 도입했다. 또한 최저 임금의 10배, 저소득자의 8% 소득자에 대해 최고 10%의 개인소득세율을 설정하기도 하였고, 담배와 술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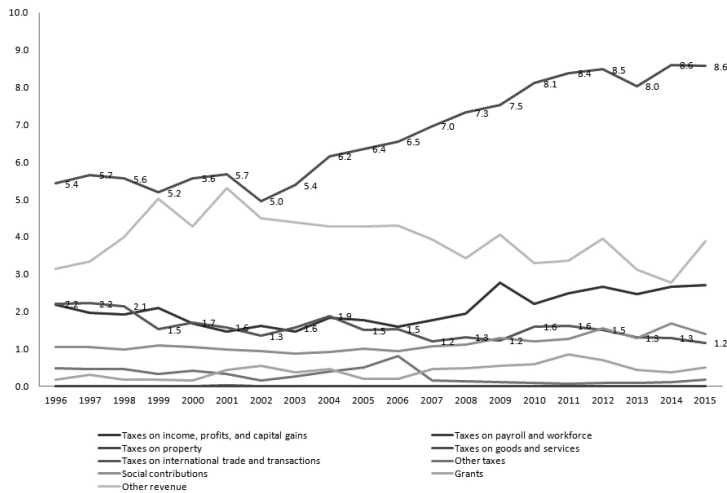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은 행정 및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정되었다.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움직임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2005년에는 법인소득세를 30%에서 20%로, 2006년에는 10%로 축소했다. 또 VAT가 면제되었거나 세율이 낮은 많은 제품에 대해 전체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등 세율 변경과 농업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방법 도입으로 세금 면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4년 조세 정책 개혁에 이어 세무 당국은 절차의 현대화, 물품(goods)에 대한 통제 강화, 징수 강화, 대 납세자 전담부서(Large Taxpayers Unit) 구성, 인적 자원 관리 개선, 직원 교육 개선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세무 정책과 세무 행정의 개혁과 함께 세관 행정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세관 코드의 현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15) 파라과이 사례는 World Bank(2006, 2013)과 Zarate(2011)를 참고로 정리하였음.

16) 그러나 실제로 이 조세 개혁은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미뤄져왔다.

〈그림 10〉 파라과이의 정부 수입구조 변화

(% of GDP)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Revenue (접속일: 2017.2.17.)

그 결과 세금 개혁으로 인해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수입(revenue)은 증가했다. 이는 광범위한 세수 기반과 납세 준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VAT 총 이행률(Gross Compliance Ratio)은 68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92로 상승했으며 기업 소득세 생산성은 2004년 0.06에서 2012년 0.19로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동시에 납세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수는 35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다(표 13 참조).

〈표 13〉 파라과이의 세금활동 지표

	2003	2004	2009	2012	2013
세수 비율	8.8	10.3	12.1	12.8	13.8
GDP 대비 VAT	4.0	4.3	5.6	6.5	
GDP 대비 법인소득세	1.4	1.8	2.8	2.7	
무역세(tax on trade)	—	—	1.2	1.5	
VAT 이행률	68	69	81	92	
법인소득세 생산성	0.06	0.11	0.19	0.19	
VAT 납세자(1000명당)	135	147.3	489.8	584.6	

	2009	2010	2011	2012	2015
연간 세금납부횟수		35	35	28	20
세금납부 소요시간		328	311	387	378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년도.

세수(tax revenue)는 2003년 GDP의 8.8%에서 2004년 10.3%로, 2010년에는 12.8%로 꾸준히 상승했다 (Appendix 참조). 1996년 GDP의 16%에서 2004년의 최고치인 45%로 증가한 공공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파라과이 정부는 세수비율을 GDP의 13%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책과 행정 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에 대한 통제, 부분적인 연금(pension) 개혁 및 세수입가 확장되면서,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동시에 공공 부채는 GDP의 15% 이하로 줄어들었다(Zarate 2011). 수익 창출체계(revenue generation)의 개선과 재정 여력의 회복으로 인해 파라과이 정부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출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지난 10년동안 파라과이의 조세개혁은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국제사회는 정책 개혁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세금 지출을 제거하고 세제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국제사회의 지원 영역은 대체로 a. 전략기획; b. 대 납세자 전담부서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역량개발; c. 새로운 VAT 환급시스템 개발; d. 감사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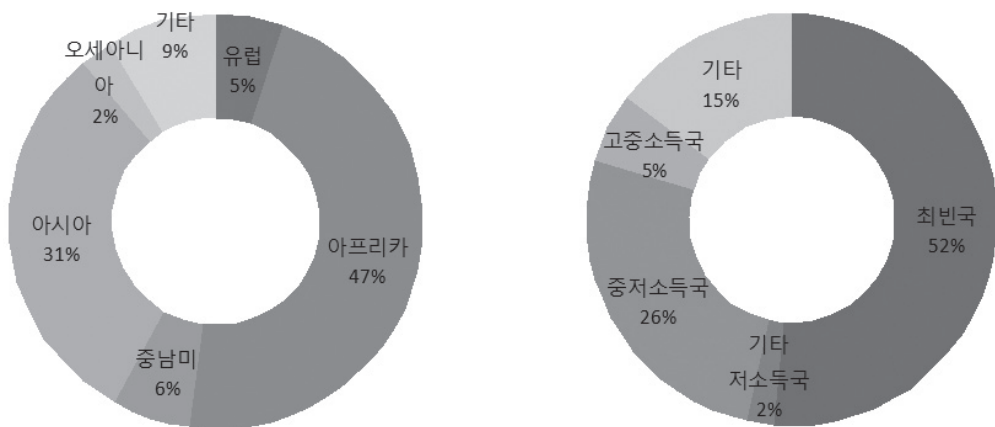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은 2004년 정책 개혁이 세수(revenue) 손실없이 구현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0년간 규제 준수 체계 및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2013년에 새로운 개인 소득세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파라과이는 전통적인 양자 간 및 다자간 협력 기관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의 혜택을 기반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페루의 세무 당국과 긴밀한 남-남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Zarate 2011).

VI. 한국의 DRM 관련 사업 현황

1. 국제사회의 DRM 지원 현황

앞서 IV. 조세개혁과 국제조세협력 중 OECD DAC의 CRS 코드를 통해 DRM 지원 ODA의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표 0참조). 공여국 측면에서 보자면 2015년 집행기준으로 볼 때 영국과 미국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독일과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전 해의 데이터는 DRM 목적코드가 직접 부여된 데이터가 2015년 한 해에 불과하고 OECD DAC의 연구진이 조세(tax**), 공공재정(public financ**) 등의 단어 검색을 통해 자의적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확히 DRM과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악된 DRM 지원 ODA 데이터 상에서 볼 때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국가들은 2010년 이후 꾸준히 DRM 관련 활동을 이어 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1〉 2015년 DRM 부문 지역 및 소득수준별 ODA 지원 현황



* 총액 US\$ 176,513million, 총 지원액(gross disbursement), CRS purpose code 15114 기준

출처: OECD Statistics (접속일: 2017.2.1).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국 관점에서 2015년 DRM ODA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47%로 가장 높고, 아시아 31%, 중남미 6% 순이었다. 전체 ODA 지원액 상에서의 비율이 아프리카 44%, 아시아 38%, 중남미 12%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극명하게 아프리카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52%, 중저소득국(low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26%로 대부분의 DRM 관련 ODA가 저소득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전체 ODA 지원 총액비율로 보면 최빈국 47%, 중저소득국 30.5%로 DRM 지원에 있어 최빈국 집중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RM 부문 ODA 상위 20개국 분포 역시 이러한 지역별 구분에서 아프리카 집중현상과 최빈국 집중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20개 수원국이 지원받은 ODA는 US\$ 117.7백만으로 이는 전체 DRM ODA의 66.7%에 해당한다.

〈표 14〉 2015년 DRM 부문 ODA 수원 상위 20개국

(단위: US\$ million, 총지원액 기준)

	수원국	ODA	공여국*
1	아프가니스탄	16.034	미국[4] 7.44]**, 영국[1] 8.59]
2	차드	14.608	IDA[1] 14.35], 프랑스[1] 0.25]
3	파키스탄	12.628	영국[3] 12.55], 미국[1] 0.07]
4	탄자니아	10.497	영국[3] 10.50]
5	필리핀	9.276	미국[3] 9.23], 일본[1] 0.04]
6	모잠비크	8.272	덴마크[4] 4.08], 영국[2] 2.29], 노르웨이, 스웨덴
7	잠비아	5.202	노르웨이[2] 3.56], 미국[3] 0.53], 핀란드, 독일
8	르완다	4.607	독일[1] 3.33], 한국[2] 1.07], 미국
9	튀니지	3.862	미국[2] 3.85], 한국[1] 0.00***]
10	케냐	3.722	스웨덴[2] 3.56], 핀란드[2] 0.11]
11	가나	3.609	덴마크[3] 1.74], 네덜란드[2] 1.12], 스위스, 미국, 영국, 한국
12	아이티	3.603	미국[1] 2.78], 캐나다[3] 0.82]
13	말리	3.330	캐나다[1] 3.00], 프랑스[1] 0.33]
14	소말리아	3.008	영국[1] 2.80], 이탈리아[1] 0.20]

15	몰도바	2,865	미국[1] 1.71], 스웨덴[2] 1.15], 헝가리
16	팔레스타인	2,784	영국[3] 2.78]
17	방글라데시	2,608	영국[4] 2.61]
18	코소보	2,420	스웨덴[1] 1.46], 미국[3] 0.96]
19	인도네시아	2,389	스위스[1] 1.87], 캐나다[1] 0.47], 한국
20	DR 콩고	2,376	독일[2] 2.37]
상위 20 개국 합계		117,702 (전체 DRM ODA의 66.7%)	

*공여액 기준 2대 공여국은 사업수와 지원액표기 ** [보고 사업 건수] 총 지원액] *** 0.006819

출처: OECD Statistics (접속일: 2017.2.1).

아프가니스탄이 약 US\$16백만으로 가장 많은 DRM ODA를 수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차드, 파키스탄, 탄자니아, 필리핀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상위 20개 수원국 중 총 11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였으며, 아시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불과하며, 아이티를 제외하고는 상위 20위에 포함된 중남미 국가가 없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수원국은 2-3개의 공여국이 5개 전후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규모가 가장 큰 것은 IDA가 차드에 섹터예산지원 방식으로 지원한 “Chad-DPO Fiscal Consolidation Program”으로 US\$14백만 규모의 유상원조 사업이었다. 무상원조 가운데 가장규모가 큰 사업은 영국이 파키스탄 공공재정관리 World Bank의 신탁기금에 지원한 것으로 US\$10백만 규모이다. 영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World Bank 신탁기금에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지원으로 동시에 무상원조를 공여한 바가 있어 지원방식의 다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방식의 결합형태도 보여주고 있다(OECD Statistics 참조).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대규모 지원은 대체로 섹터예산지원 또는 신탁기금을 활용한 바스켓 파이낸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드물게 기술지원에서도 영국-아프가니스탄 기술지원 사례와 같이 US\$8백만 규모의 사업도 이행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DRM ODA 예산 확대를 위해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검토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한국 중점협력국의 DRM과 ODA 지원

한국의 중점협력국의 조세활동과 기타 DRM 관련 활동에 대해서 주목한 자료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중점협력국들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상의 국가별 정보와 평가 카테고리에도 세입과 불법자금 흐름 등 DRM과 관련한 주요 정보들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ATI 이행 준수와 새로운 ODA 지원 영역으로서의 DRM 분야 확대를 위해서는 중점협력국들의 조세수입과 경제성장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점협력국 중 GDP 대비 조세수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볼리비아로 28.3%, 그 뒤로 베트남(24.26%), 모잠비크(21.9%), 우즈베키스탄(20.2%), 세네갈(18.8%) 순이었다. 이들은 세네갈을 제외하고는 모두 5.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 총 자본형성(gross capital formation)대비 순 원조 비중은 원조 의존도를 보여주는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 앞서 DRM의 필요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세개혁과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원조의존도를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원조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국내수입(domestic revenue) 창출을 지원하여 정부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원조의존도가 높은 르완다,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 등에 국제적으로 DRM ODA가 지원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진다.

조세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최적값(optimal)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의 크기나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조세수입의 규모가 달라지고, 또한 그 예산 사용과 관련한 시스템의 작동여부도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들이 조세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SDGs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GDP 대비 15% 이상의 조세수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규모에 비해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진 나라들로 분류될 수 있다(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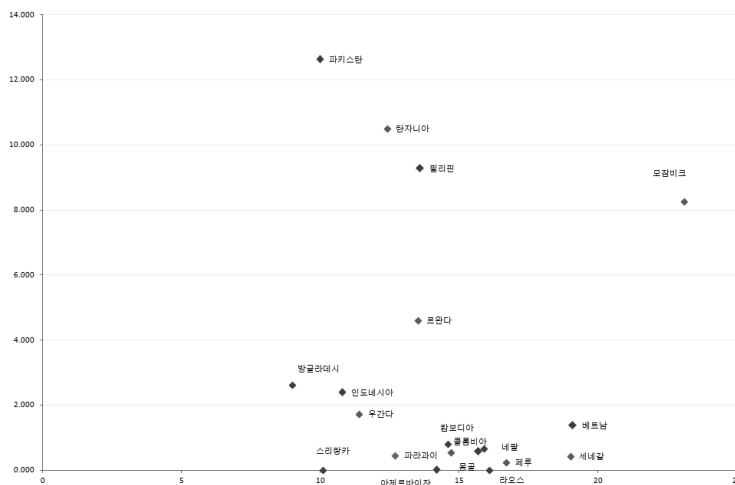
〈표 15〉 한국 ODA 중점협력국의 경제성장률과 원조 및 정부 수입 현황

	GDP ¹⁾	GDP 성장률 ²⁾	GNI p. c. ³⁾	순 원조 유입액 ¹⁾	순 원조 ⁴⁾	정부수입 ⁵⁾	조세수입 ⁵⁾
아제르바이잔	75,198	2.0	17,000	215	1.1	39.9	14.2
방글라데시	172,885	6.1	3,350	2,418	4.9	11.1*	9.3**
볼리비아	32,996	5.5	6,320	672	9.7	..	28.3**
캄보디아	16,778	7.1	3,090	799	21.7	16.5	14.6
콜롬비아	378,416	4.4	12,950	1,221	1.2	26.2	14.7
에티오피아	55,612	10.3	1,500	3,585	17.0	..	9.28**
가나	38,617	4.0	3,920	1,126	10.7	..	15.0**
인도네시아	890,487	5.0	10,210	-388	-0.1	14.6	10.8
라오스	11,739	7.5	5,070	472	13.5	18.9	16.1
몽골	12,227	7.9	11,040	315	7.3	27.7*	13.6**
모잠비크	16,961	7.4	1,120	2,103	22.4	25.7*	21.9**
미얀마	65,575	8.0	4,680	1,380	..	.	15.2**
네팔	19,812	6.0	2,440	880	10.8	18.4	15.9
파키스탄	244,361	4.7	5,110	3,612	10.1	14.3	10.0
파라과이	30,881	4.7	8,510	60	1.2	21.9	12.7
페루	201,021	2.4	11,650	325	0.7	21.7	16.7
필리핀	284,834	6.2	8,480	676	1.2	15.1	13.6
르완다	7,912	7.0	1,640	1,034	50.1	16.0	13.5
세네갈	15,285	4.3	2,290	1,107	29.2	20.0**	18.8**
스리랑카	80,025	4.9	10,960	488	1.9	11.3	10.1
탄자니아	48,197	7.0	2,520	2,648	18.2	13.5	12.4
우간다	27,761	5.2	1,760	1,633	21.9	11.6	11.4
우즈베키스탄	62,644	8.1	5,880	324	2.1	..	20.2**
베트남	186,205	6.0	5,390	4,218	8.4	21.5*	24.26**

¹⁾ US\$ 백만; ²⁾ %; ³⁾ PPP, current international \$; ⁴⁾ 총자본형성(gross capital formation) 대비 %; ⁵⁾ GDP 대비 %; *2013년 기준; **USAID 출처: World Databank (접속일: 2017.1.1);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접속일: 2017.2.1.)

그러나 실제로 DRM 목적의 ODA가 지원되는 국가를 살펴보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참조). 특히 〈그림 11〉에서 아시아 국가를 표기한 붉은 점을 보면 파키스탄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수원하는 DRM 목적 ODA는 그 필요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DRM 목적 ODA가 아프리카 최빈국 중심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때, ODA 지원에 있어 아시아 비중이 높은 한국 DRM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12〉 2015년 한국 중점협력국의 조세수입과 DRM ODA 수원현황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17.1.1); OECD Statistics (접속일: 2017.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RM 논의는 비단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BEPS 프로젝트 등을 비롯하여 불법자금 흐름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자금흐름 2004-2013년의 10년 동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US\$180억의 자금이 유출되어 전체 국가 중 9위에 자리했다. 그 뒤로는 아제르바이잔(연평균 US\$95억), 필리핀(연평균 US\$90억), 베트남(연평균 US\$57억)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IFFs의 대부분이 이전가격조작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추적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협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04년 이후 높은 수준의 IFFs를 보이면서도 그 액수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페루 등의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16 참조).

〈표 16〉 한국 ODA 중점협력국의 불법자금 유출 현황: 2004-2013

(단위: US\$ 백만)

지역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평균	순위
아 시 아	베트남	3,121	4,269	4,964	4,896	6,588	4,032	4,668	6,499	9,470	9,074	57,581	5,758	18
	인도네시아	18,466	13,290	15,995	18,354	27,237	20,547	14,646	18,292	19,548	14,633	180,710	18,071	9
	캄보디아	374	570	565	1,046	971	930	1,273	1,731	3,620	4,007	15,086	1,509	61
	필리핀	9,192	11,620	9,970	7,910	6,878	8,594	8,874	10,541	8,733	7,938	90,250	9,025	19
	방글라데시	3,347	4,262	3,378	4,098	6,443	6,127	5,409	5,921	7,225	9,666	55,877	5,588	26
	몽골	0	81	14	212	774	0	0	76	195	125	1,478	148	112
	라오스	6	0	516	930	595	702	478	819	1,009	1,584	6,638	664	80
	네팔	414	503	678	544	854	899	1,521	262	0	0	5,674	567	86
	스리랑카	1,487	1,389	1,554	1,890	1,655	1,435	2,634	4,602	1,567	1,753	19,967	1,997	53
	파키스탄	0	202	0	0	51	0	729	0	405	529	1,917	192	109
아 프 리 카	미얀마	663	604	626	336	1,362	1,010	2,132	137	0	0	2,566	257	79
	가나	0	0	0	37	374	1,342	721	691	190	659	4,13	401	94
	에티오피아	376	785	1,152	1,491	1,823	2,999	5,618	4,249	3,973	3,371	25,835	2,583	46
	모잠비크	0	0	362	103	0	23	640	44	994	260	2,426	243	106
	르완다	208	36	136	177	145	285	430	526	607	1,039	3,589	359	97
	우간다	550	829	466	701	1,012	1,446	1,143	27	612	363	7,149	715	78
	탄자니아	112	839	36	58	390	308	1,355	606	793	323	4,820	482	90
	세네갈	318	1,109	490	693	1,440	606	588	764	997	1,029	8,034	803	74
	아제르바이잔	1,147	2,944	5,634	26,816	7,061	8,410	7,860	7,576	12,815	14,736	94,999	9,500	17
	콜롬비아	1,749	1,373	582	608	3,708	1,640	625	1,188	2,088	1,185	14,745	1,475	63
중 남 미	페루	4,062	1,687	2,909	2,474	3,117	4,163	4,722	6,441	6,249	7,013	42,838	4,284	33
	볼리비아	628	363	96	103	0	443	809	0	1,551	2,273	6,267	627	83
	파라과이	3,588	4,313	4,514	2,461	4,563	2,879	2,653	3,828	4,585	4,116	37,501	3,750	37

* 우즈베키스탄: 데이터 없음.

출처: Kar and Spanjers (2015:28-33).

3. 한국과 KOICA의 DRM 지원현황

2015년 기준 한국은 DRM 목적으로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US\$3.4백만 규모의 ODA를 지원하였다. 2015년 실적은 모두 KOICA에서 지원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한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르완다 『국세 및 관세서비스 역량 강화사업』은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이 두 사업의 총액이 US\$3.13백만에 달해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에 지원한 US\$7만은 세금행정시스템 관련 World Friends Korea 퇴직봉사단원 파견 사업이며, 나머지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지원되었다.

〈표 17〉 2015년 한국의 DRM 지원 실적

(US\$백만/Current price)

집행기관	수원국	사업명	집행총액
KOICA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	2.064849
KOICA	르완다	국세 및 관세 서비스 역량강화사업*	1.074239
KOICA	태국	세금행정시스템 관련 WFK퇴직봉사단 파견**	0.071079
KOICA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관세분야 고위급 파트너십*** (Invitational Revenue Package Seminar for High Level Officials from Africa and Central Asia)	0.005694
	우즈베키스탄		0.008474
	키르기스탄		0.008658
	아제르바이잔		0.005259
	우간다		0.006757
	르완다		0.007006
	짐바브웨		0.012546
	말라위		0.006874
	가나		0.012515
	에티오피아		0.006229
	카메룬		0.006387
	이집트		0.00592
	튀니지		0.006819
	모로코		0.005659
	알제리		0.006176

KOICA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 역량강화***	0.048678
KOICA	에콰도르	국세통합전산망 개발 과정***	0.1205
합계			3.490

* 프로젝트 사업(C01) ** 봉사단 파견(D01) *** 연수(D02)

출처: OECD Database (접속일: 2016.12.31)

CRS 목적코드로 분류된 2015년 이전의 데이터에서 내용상 분류해볼 때 DRM 지원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EDCF의 2005년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시스템 전산화 사업(US\$23백만), 2012년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US\$26백만) 등이 있다. 기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ODA를 통한 조세역량 강화는 대부분 기술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KOICA 위탁연수 과정과 자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2013년 관세현대화 프로젝트로 콜롬비아, 페루,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등 4개국에 각 US\$64만, 총 US\$2.6백만을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다.

박은지(2011)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KOICA 사업 가운데 조세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KOICA에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사업 가운데 조세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당해 연도 전체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는 조세관련 사업을 넓게 정의해 연수사업 중 경제개발전략과 관련된 것도 포함하여 집계하였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2008-2012년도 5년 동안 연평균 1% 미만의 사업이 조세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ICA의 조세역량 강화 사업은 크게 관세 시스템 현대화 관련 사업, 국세청 및 국세 시스템 현대화 사업, 조세행정 역량강화 사업 등 3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표 18). 우선, 관세 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몽골, 탄자니아, 네팔, 우즈베키스탄에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 업무, 통관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부터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까지 총 4건, 총 지원액은 US\$1.57백만 규모이다. 국세청 및 국세 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과테말라 국세청 위험관리능력 향상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사업』을 2009-2011년(3년) 동안 실시하여 총 US\$2.85백만을 지원하였다. 국세와 관세를 통

〈표 18〉 KOICA의 조세역량 강화사업

(단위: US\$백만)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관세 통관 시스템 구축사업	2008-2009	2.5
탄자니아 조세청 관세행정 현대화사업	2009-2011	3.26
네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2011-2013	5.0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	2013-2016	5.5
과테말라 국세청 위험관리능력 향상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	2009-2011	2.85
르완다 관세 및 국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DEEP)	2014-2017	4.0

출처: KOICA 통계시스템

합하는 조세행정 현대화 사업으로 『르완다 관세 및 국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2014-17년 (3년) 동안 US\$4백만 규모로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Single Window 기반의 관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관세 시스템 통합하여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지원과 전문가 기술지원을 시행 중이다.

DRM관련 기술협력은 주로 조세행정, 관세행정, 공공재정관리 및 지방재정관리, 감사역량 강화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조세역량 강화와 관련된 연수과정들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2개 과정이 실시되었다(표 19참조).

〈표 19〉 KOICA 조세역량강화 연수사업: 1991-2015

주제	연수과정	관련 수행기관
공공재정관리 및 지방재정 관리	35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
조세행정 역량강화	31	국세청,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세행정 역량강화	40	관세청
감사 역량강화	16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출처: 김은주 (2016)

또한 수원국 재정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지원은 개발도상국 정부 예산에 ODA 지원액을 편입시켜 지출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수원국 전체 공공재정관리 역량의 향상과 이를 통한 세수관리 및 조세행정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여국의 PFM 지원 역시 DRM 지원 영역으로 보았다. KOICA는 2016년 현재 총 4건(총 규모 US\$26백만)의 사업을 수원국 재정시스템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다(KOICA 통계시스템). 이 중 3건은 르완다에 지원되는 바스켓 파이낸싱 방식으로 농촌개발과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부문의 지원이고, 나머지 1건은 World Bank 신탁기금(Trust Fund)를 통한 캄보디아 보건 섹터예산지원 사업이며, DRM 관련 또는 공공재정 관련 분야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의 DRM 조세역량 강화 관련 ODA 지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¹⁷⁾는 UNI-Pass로 널리 알려져 있는 관세청의 ICT 기반 싱글윈도우 시스템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다. 또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또는 세무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이 총 120여 과정을 개설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재정관리 역량 강화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반예산지원, 섹터예산지원, 바스켓 파이낸싱, 남-남협력 사업 등 다른 지원방식(modality)을 활용한 ODA 지원은 지금까지 DRM 관련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ATI 가입 이후 DRM 분야에 대한 ODA 증액을 약속한 한국의 ODA는 지원 분야의 다양성과 함께 지원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17) CRS 목적코드 상 C01로 분류됨을 의미.

VII. 결론: 한국과 KOICA의 DRM 지원확대를 위한 제언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안에서 국내재원동원의 여러 이슈들과 ODA를 통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2015년 6월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회의에서 ATI에 가입함으로써 2020년까지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를 두 배로 늘리기로 선언한 바 있으며, 아시아의 유일한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중점분야 발굴의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과 KOICA의 DRM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다른 섹터나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DRM과 관련된 지원은 특히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 그리고 수원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개혁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 징수과정, 징수된 세금을 국내 복지와 경제성장에 사용하는 순환과정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앞서 파라과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의 입안이 반드시 즉각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공공재정 시스템을 비롯한 거버넌스의 개혁과 제도의 확립, 안착, 수정 및 개선 등의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은 르완다-영국 간의 20여년에 걸친 양자 지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ODA도 다양한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형 사업은 대부분 싱글윈도우 관세분야 현대화 사업에 집중되어 비교적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세원발굴을 위해서 수원국의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체계를 수립하는 정책자문 사업과 함께 한국의 지방재정 운용이 비교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재정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할 패키지형 프로그램의 발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DRM의 핵심은 조세역량 강화와 함께 불법자금의 유출을 차단하여 개발도상국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불법자금유출 차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한 전 세계적인 조세투명성 확보 노력과 연계되어야 한다. 조세투명성 확보와 ODA의 연계는

국내외적인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BEPS initiative에 참여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기업도 자발적 기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내보고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DRM 분야 ODA 지원도 이에 맞추어 MNEs의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금융정보를 분석하여 도난자산을 환수하는 형태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한국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EDCF, KOICA가 모두 참여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별 특성을 고려한 DRM 지원 전략을 섹터로 구분하여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취약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취약국의 경우 DRM 지원이 국가형성(state-building)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아이티, 차드 등에서의 DRM 지원이 높은 것이 국가형성 전략과 연계되어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조세수입과 정부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과 원조의존도 간의 음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원조의존도를 경감할 수 있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ODA 지원이 없이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ODA 수원 졸업의 가능성이 높거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전략 및 공여국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불법자금유출량이 매우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조세수입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DRM 섹터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천연자원에 대한 채굴권과 로열티가 비과세수입(non-tax revenue)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원부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정책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역량과 감사역량을 위해 남남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중남미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삼각협력방식의 연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 이외에도,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사업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ICA를 비롯한 한국의 DRM 관련 ODA는 프로젝트 사업 또는 초청 연수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수원국 시스템 이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예산지원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원국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한 절충으로 바스켓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볼 수 있다. 영

국이 르완다 RRA 설립지원 이후 World Bank와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한 방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바스켓 파이낸싱을 통해 공여국 간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조세분야 만을 위한 특별 회계방식을 사용하여 수원국 예산 및 공공재원관리 시스템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orld Bank,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수원국 내에서 조세분야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다자신탁기금에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원국내에서 원조규모가 크고 거버넌스 분야에 전략우선순위를 두는 주요 공여기관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DRM분야 ODA와 관련하여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국가 및 ODA 이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RM과 관련하여 수원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활동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조세제도의 형성과 개혁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과 문화, 정부 전체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한 가운데 조세제도의 수립과 세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영국-르완다의 경우 프로젝트의 시작 전부터 이후에 이르기까지 멘토링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후속연구로서 국별 수요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대상국은 출구전략 수립이 필요한 국가이거나, 취약국 중 비교적 KOICA의 사업 경험이 다양한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수원국 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른 공여기관을 파악하고 공동 프로젝트 등의 파트너십을 강화 방안 역시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주, 2016,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공행정분야 개발원조: 현황과 제언,” 2016 국제개발 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2016.12.9.) 발표 논문.
-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개발과이슈 25호, 성남:한국국제협력단.
- 박명지, 2011, KOICA의 거버넌스 분야 개발협력 방안: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수영 · 오수현, 2015,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합의 분석, 개발과 이슈 24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6, 국제개발협력 기본편, 서울: 시공미디어.
- African Development Bank, 2010,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for Poverty Reduction in East Africa: Rwanda Case Study. Regional Department East Africa.
- Ali, Merima, Odd-Helge Fjeldstad and Ingrid Hoem Sjursen, 2014, “To Pay or Not to Pay? Citizens’ Attitudes Toward Taxation in Kenya, Tanzania, Uganda and South Africa”, World Development, vol. 64, pp. 828–842.
- Booth, David, 2011, “Aid Effectiveness: Bringing Country Ownership (and Politics) Back In,” Africa Power and Politics, ODI Working paper 336. Available at <http://www.odi.org.uk/respircecs/download/4928.pdf>.
- Clausing, Kimberly A., 2016, “The Effect of Profit Shifting on the Corporate Tax Base in the United States and Beyond,” National Tax Journal, 69(4):905–934.
- Danninger, Stephan, 2005, Revenue Forecasts as Performance Target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WP/05/14,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vailable at: <http://www.estimacionestributarias.com/archivos/paper%20del%20FMI%20sobre%20proyecciones%20II.pdf>
- Easson, A.J. and E.M. Zolt, 2003, Tax incentives. Paper prepared for World Bank course on practical issues of tax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28 April–1 May. World Bank Institute.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TPA/Resources/EassonZoltPaper.pdf>
- Eckardt and Schickinger, 2011, Taxation in PEFA Assessments, International Tax Compact, Draft Discussion Paper, Bon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http://taxcompact.net/documents/ITC-PEFA_draft.pdf
- EU Policy (2010)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uropeaid/policies/financing-development/domestic-resource-mobilisation_en
- Everest-Phillips, M, 2008, Business Tax as State-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gulation and Governance, 8(2): 123–54, India: Tata Energy Research Institute. available at http://www.itdweb.org/documents/Philips_IJRG_

Dcmbr_2K8.pdf

- Fjeldstad, Odd-Helge, and Mick Moore, 2009, "Revenue authorities and public authority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7(1): 1-18.
- Gaspar, Vitor, Laura Jaramillo and Philippe Wingender, 2016, "Tax Capacity and Growth: Is there a Tipping Point?" IMF Working Paper, Washington DC.: IMF.
-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2014,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 Roadmap for Developing Country Participation", available at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global-forum-AEOI-roadmap-for-developing-countries.pdf>
- International Centre for Tax and Development, 2015, "Making VAT More Visible Can Be an Efficient Tool in Building a Tax-Paying Culture", available at <http://www.ictd.ac/blogs/entry/making-vat-more-visible-can-be-an-efficient-tool-in-building-a-tax-paying-culture>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An Upside Down View of Governance," Briton, UK: IDS. available at <http://www.ids.ac.uk/files/dmfile/Upside.pd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Revenue Mobi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vailable at <http://www.imf.org/external/np/pp/eng/2011/030811.pdf>
- _____, 2014a, "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available at <https://www.imf.org/external/np/pp/eng/2014/012314.pdf>.
- _____, 2014b, "Spillovers in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 available at <https://www.imf.org/external/np/pp/eng/2014/050914.pdf>.
- _____, 2015, "Current Challenges in Revenue Mobilization: Improving Tax Compliance", available at <https://www.imf.org/external/np/pp/eng/2015/020215a.pd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2011,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Tax Systems," available at <https://www.imf.org/external/np/g20/pdf/110311.pdf>
- _____, 2015, "Options for Low Income Countries'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available at <https://www.imf.org/external/np/g20/pdf/101515.pdf>
- _____, 2016, "The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Concept Note available on all four organizations' websites.
- Kar, Dev and Joseph Spanjers, 2015,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Developing Countries: 2004-2013*, Washington DC: Global Financial Integrity.
- Kloeden, D., 2011, *Revenue Administration Reforms in Anglophone Africa since the Early 1990s*, IMF Working Paper WP/11/162, Washington DC.: IMF.

- Köhnen, Daniel, Thorben Kundt and Christian Schuppert, 2010 “Mapping Survey, Taxation an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Tax Compact Report for GTZ, Eschborn: GTZ.
- Lamgruber, Andrea, Andrew Masters, and Duncan Cleary, 2015, Understanding Revenue Administration: An Initial Data Analysis Using the Revenue Administration Fiscal Information Tool, Washington DC: IMF.
- Lewis Jr. R. Stephen, 1964, “Aspects of Fiscal Policy and Resource Mobilization in Pakistan,”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Vol. 2, pp. 261–282.
- Lockwood, 2005, Fiscal Decentralization: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Warwick Economic Research Papers.
- Morrissey Oliver, 2013, Does Aid Discourage 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KfW–Development Research, Views on Development, No.4, 22 July 2013.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PDF/Download-Center/PDF-Dokumente-Development-Research/2013-07_22_ME_Morrissey_en.pdf.
- Nakamura, Yoriko and April Williams, 2015, Government Health Spending and Tax Reform in Rwanda, 2000–2013– A Case Study, USAID Results for Development Institute. Available at <https://www.hfgproject.org/government-health-spending-tax-reform-rwanda-2000-2013-case-study/>
- Ndikumana L. and Boyce J., 2014 Strategies for Addressing Capital Flight,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PERI),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Working Paper Series, No.361, October 2014. available at: 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51-400/WP361.pdf.
- Ndikumana, J., 2014, “Capital Flight from Africa,” in Capital Flight from Africa: Cause, Effects, and Policy Issues, Eds. Ajayis, S. Ibi, and L. Ndikumana(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Paris: OECD.
- _____, 2010, From Citizen–State Relations, Improving Governance Through Tax Reform, Paris: OECD.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ac/governance-peace/governance/docs/46008596.pdf>
- _____, 2013a Tax and Development: Aid Modalities for Strengthening Tax Systems, Paris: OECD, Available at <http://www.oecd.org/fr/publications/tax-and-development-9789264177581-en.htm>
- _____, 2013b, “What Drives Tax Morale” Tax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Paris: OECD. Available at http://www.oecd.org/ctp/tax-global/TaxMorale_march13.pdf
- _____, 2014, “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in Fragile States, Paris: OECD. Available

- at <http://www.oecd.org/dac/governance-peace/conflictfragilityandresilience/docs/FSR-2014.pdf>
- _____, 2015, Examples of Successful DRM Reform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is: OECD. Available at <https://www.oecd.org/ctp/tax-global/examples-of-successful-DRM-reforms-and-the-role-of-international-co-operation.pdf>
- _____, 2016, Tax Administrations and Capacity Building: A Collective Challenge, Paris: OECD. Available at <http://www.oecd.org/ctp/tax-administrations-and-capacity-building-9789264256637-en.htm>
- Pomeranz, Dina, 2015, “No Taxation without Information: Deterrence and Self-Enforcement in the Value Added Ta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5, pp. 2539–2569.
- Prichard, 2010a, Taxation and State-building: Towards a GOVERNANCE Focused Tax-Reform Agenda, Institut of Development Studies Working Paper No. 341, Briton, UK: IDS. available at <http://www.ids.ac.uk/files/dmfile/Wp341.pdf>.
- _____, 2010b, Citizen-State Relations: Improving Governance through Tax Reform, Paris: OECD DAC GOVNet.
- Ruiz, M., R. Sharpe, and M. J. Romero, 2011, “Approaches and Impacts: IFI Tax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EUODAD and Actionaid. available at http://www.actionaid.org.uk/doc_lib/ifi_tax_policy_developing_countries.pdf.
- Saenz, Hernan C. and Tove M. Ryding, 2016, For Whose Benefit?: A Different Perspective on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Brussels: Eurodad.
- USAID, 2015,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Financing Country-led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5/120314_E3%20Brochure_Tifold_L_singles_0.pdf.
- World Bank 2006, Paraguay: Public Expenditure Review: Main Report. available at: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06/05/6884196/paraguay-public-expenditure-review-main-report>.
- _____, 2013, A Public Expenditure Review for Paraguay: Supplementary volume with selected background papers. available at: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3/11/23196405/public-expenditure-review-paraguayquest-optimal-tax-expenditure-policies-shared-prosperity-vol-2>.
- World Bank Group, 2015, “From Billions to Trillions: Transforming Development Finance,” available at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EVCOMMINT/Documentation/23659446/DC2015-0002\(E\)FinancingforDevelopment.pdf](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EVCOMMINT/Documentation/23659446/DC2015-0002(E)FinancingforDevelopment.pdf)
- Zarate Walter A. 2011, Analisis del Sistema Tributario Paraguayo. CADEP. available at <http://www.cadep.org.py/2012/01/analisis-del-sistema-tributario-paraguayo/>

APPENDIX 1.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DRM 관련 원문)¹⁸⁾

A. Domestic public resources

20. For all countries, public policies and the mobilization and effective use of domestic resources, underscored by the principle of national ownership, are central to our common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ilding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many countries since Monterrey, we remain committed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mobilization and effective use of domestic resources. We recognize that domestic resources are first and foremost generated by economic growth, supported by an enabling environment at all levels. Sound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ies, including countercyclical fiscal policies, adequate fiscal space, good governance at all levels, and democratic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people are necessary to achieve our goals. We will strengthen our domestic enabling environments, including the rule of law, and combat corruption at all levels and in all its forms. Civil society, independent media, and other non-State actors also play important roles.
21. Evidence shows that 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and women's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the economy are vital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ignificantly enhance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We commit to promoting social inclusion in our domestic policies. We will promote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laws, social infrastructure and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enable women's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and their equal access to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leadership.
22. We recognize that significant additional domestic public resources, supplemented by international assistance as appropriate, will be critical to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commit to enhancing revenue administration through modernized,

progressive tax systems, improved tax policy and more efficient tax collection. We will work to improve the fairness, transparen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our tax systems, including by broadening the tax base and continuing efforts to integrate the informal sector into the formal economy in line with country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we will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upport efforts to build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enhanc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e welcome efforts by countries to set nationally defined domestic targets and timelines for enhancing domestic revenue as part of thei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and will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need in reaching these targets.

23. We will redouble efforts to substantially reduce illicit financial flows by 2030, with a view to eventually eliminating them, including by combating tax evasion and corruption through strengthened national regulation and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will also reduce opportunities for tax avoidance, and consider inserting anti-abuse clauses in all tax treaties. We will enhance disclosure practices and transparency in both source and destination countries, including by seeking to ensure transparency in all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Governments and companies to relevant tax authorities. We will make sure that all companies, including multinationals, pay taxes to the Governments of countries where economic activity occurs and value is crea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and policies.
24. We note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Africa. We invite other regions to carry out similar exercises. To help combat illicit flows, we invit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World Bank and the United Nations to assist both source and destination countries. We also invite appropriat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 publish estimates of the volume and composition of illicit financial flows. We will identify, assess and act on money-laundering risks, including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standards on anti-money-laundering/counter-terrorism financing. At the same time, we

will encourage information-sharing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o mitigate the potential impact of the anti-money-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standard on reducing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25. We urge all countries that have not yet done so to ratify and accede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encourage parties to review its implementation. We commit to making the Convention an effective instrument to deter, detect, prevent and counter corruption and bribery, prosecute those involved in corrupt activities, and recover and return stolen assets to their country of origin. We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elop good practices on asset return. We support the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that support the recovery of stolen assets. We further urge that regional conventions against corruption be updated and ratified. We will strive to eliminate safe havens that create incentives for transfer abroad of stolen assets and illicit financial flows. We will work to strengthen regulatory frameworks at all levels to further increas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corporate sector, as well as public administrations. We will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ational institutions to combat money-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26. Countries relying significantly on natural resource exports face particular challenges. We encourage investment in value addition and processing of natural resources and productive diversification, and commit to addressing excessive tax incentives related to these investments, particularly in extractive industries. We reaffirm that every State has and shall freely exercise full permanent sovereignty over all its wealth,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activity.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corporat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ll companies, notably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We encourage countries to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take note of voluntary initiatives such as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18) http://www.un.org/esa/ffd/wp-content/uploads/2015/08/AAAA_Outcome.pdf

Initiative. We will continue to share best practices and promote peer learning and capacity-building for contract negotiations for fair and transparent concession, revenue and royalty agreements, and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contracts.

27. We commit to scaling up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We encourage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capacities and circumstances,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ransparency and adopt appropriate policies, includ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reporting country-by-country to tax authorities where they operate; access to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for competent authorities; and progressively advancing towards automatic exchange of tax information among tax authorities as appropriate, with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e least developed, as needed. Tax incentives can be an appropriate policy tool. However, to end harmful tax practices, countries can engage in voluntary discussions on tax incentives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forums.
28. We stress that efforts i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should be universal in approach and scope and should fully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needs and capacities of all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We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or their regional networks in this work, and call for more inclusiveness to ensure that these efforts benefit all countries. We welcome ongoing efforts, including the work of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nd take into account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for the Group of 20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We support strengthening of regional networks of tax administrators. We take note of ongoing efforts, such as those of IMF, including on capacity-building, and the OECD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initiative. We recognize the need for technical assistance through multilateral, regional, bilateral and South-South cooperation, based on different needs of countries.
29.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clusive cooperation and dialogue among

national tax authorities on international tax matters.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work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cluding its subcommittees. We have decided that we will work to further enhance its resources in order to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and operational capacity. To that end, we will increase the frequency of its meetings to two sessions per year, with a duration of four working days each. We will increase the engagement of the Committee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rough the Special Meet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ax Matters, with a view to enhancing intergovernmental consideration of tax issues. Members of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report directly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e continue to urge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Committee and its subsidiary bodies through the voluntary trust fund, to enable the Committee to fulfil its mandate, including supporting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y experts at subcommittee meetings. The Committee members shall be nominated by Governments and acting in their expert capacity, who are to be drawn from the fields of tax policy and tax administration and who are to be selected to reflect an adequate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representing different tax systems.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30. We will strengthen national control mechanisms, such as supreme audit institutions, along with other independent oversight institutions, as appropriate. We will increase transparency and equal participation in the budgeting process, and promot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nd tracking. We will establish transparent public procurement frameworks as a strategic tool to reinforce sustainable development. We take note of the work of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which promotes th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s to their citizens,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and government services.
31. We reaffirm the commitment to rationalize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by removing market distort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by restructuring taxation and phasing out those harmful subsidies, where they exist, to reflect their environmental impacts,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minimizing the possible advers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protects the poor and the affected comm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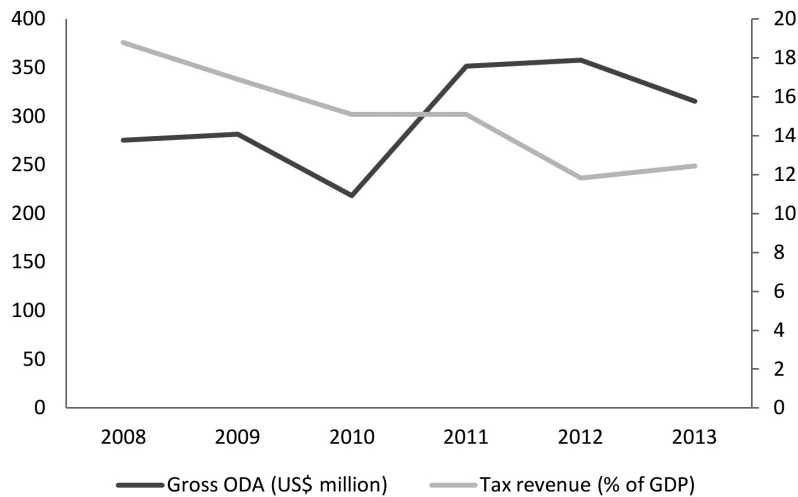
32. We note the enormous burden that non-communicable diseases place o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sts are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e recognize, in particular, that, as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of prevention and control, price and tax measures on tobacco can be an effective and important means to reduce tobacco consumption and health-care costs, and represent a revenue stream for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many countries.
33. We note the role that well-function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can play in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in credit market segments in which commercial banks are not fully engaged and where large financing gaps exist, based on sound lending frameworks and compliance with appropriate social and environmental safeguards. This includes areas such as sustainable infrastructure, energy, agriculture, industrializati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s well as financial inclusion and financing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e acknowledge that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lso play a valuable countercyclical role, especially during financial crises when private sector entities become highly risk-averse. We call on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to expand their contributions in these areas, and further urge relevant international public and private actors to support such banks in developing countries.
34. We further acknowledge that expenditures and investment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re being devolved to the sub-national level, which often lacks adequate technical and technological capacity, financing and support. We therefore commit to scaling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rengthen capacities of municipal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We will support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implementing resilient and environmentally sound infrastructure, including energy, transport, water and sanitation, and sustainable and resilient buildings using local materials. We will strive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in their efforts to mobilize revenues as appropriate. We will enhance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strength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inks between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within the context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We will work to strengthen debt management, and where appropriate to establish or strengthen municipal bond markets, to help sub-national authorities to finance necessary investments. We will also promote lend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banks, along with risk mitigation mechanisms, such as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while managing currency risk. In these efforts, we will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decisions affecting their communities, such as in improving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management. By 2020, we will increase the number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ies and plans towards inclusion, resource effici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resilience to disasters. We will develop and implement holistic disaster risk management at all level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In this regard, we will support national and local capacity for prevention, adaptation and mitigation of external shocks and risk management.

APPENDIX 2. 중점협력국 조세 데이터

1. 아제르바이잔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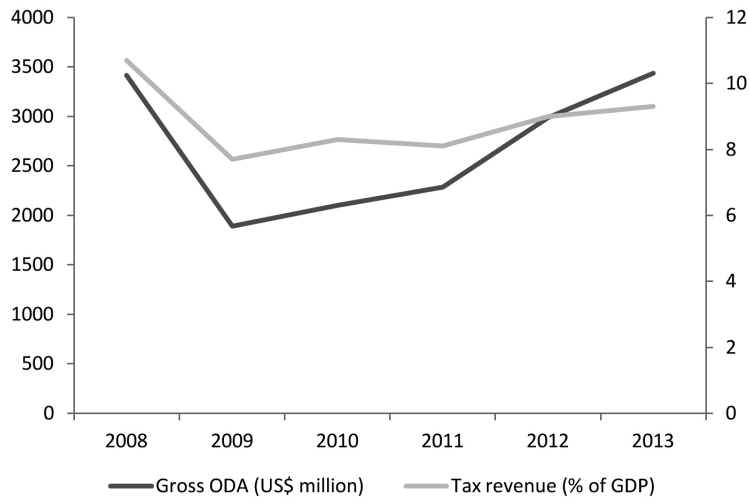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8.8	16.9	15.1	15.1	11.82	12.45
VAT ¹⁾	4.16	2.5	3.1	3.1	4.94	4.58
소득세 ¹⁾	7.67	9.1	7.5	7.5	3.29	4.19
법인세 ¹⁾	2.29	2.2	1.7	1.7	1.35	1.41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0.24	—	0.25	0.25	0.25	0.25
VAT 도입연도	1992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2. 방글라데시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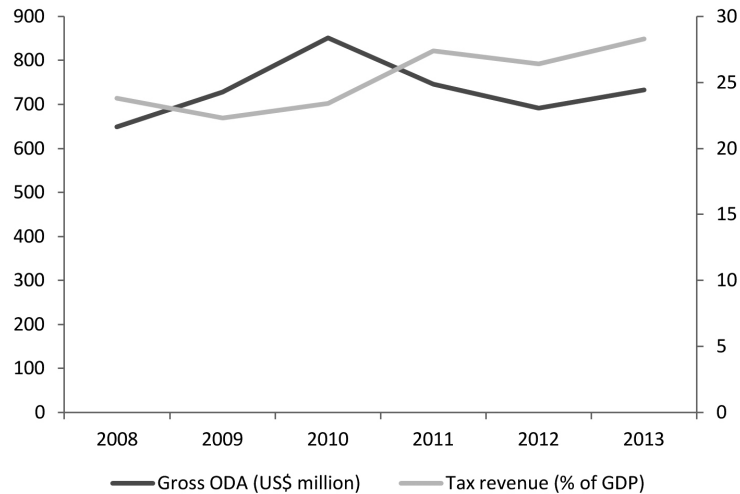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0.7	7.7	8.3	8.1	9.00	9.30
VAT ¹⁾	2.93	2.6	2.6	2.9	2.93	3.47
소득세 ¹⁾	—	0.7	0.7	1.00	1.00	1.47
법인세 ¹⁾	—	1.0	1.3	1.00	1.00	1.10
조세행정비용 ²⁾	—	1.66	1.66	1.66	1.66	1.66
조세공무원 수 ³⁾	—	0.09	0.10	0.10	0.10	0.10
VAT 도입연도	1991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3. 볼리비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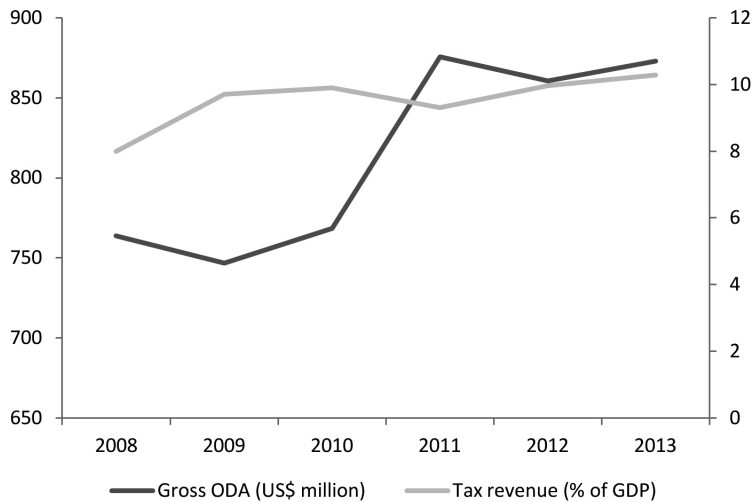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23.8	22.3	23.4	27.4	26.40	28.30
VAT ¹⁾	6.23	7.2	7.2	6.5	7.00	6.80
소득세 ¹⁾	2.30	2.9	0.5	3.9	4.10	1.20
법인세 ¹⁾	—	—	—	—	—	—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0.14	0.13	0.13	0.15	0.15
VAT 도입연도	1973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4. 캄보디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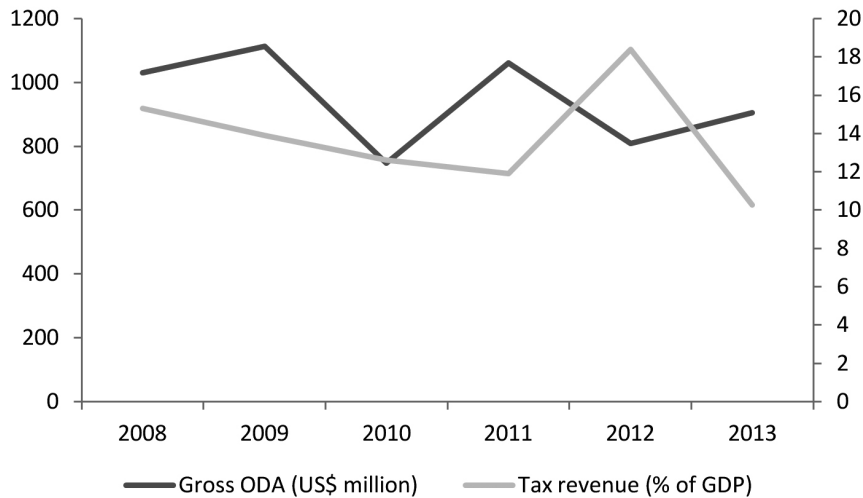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8.0	9.7	9.9	9.3	9.96	10.29
VAT ¹⁾	2.80	3.3	3.3	3.3	3.64	3.64
소득세 ¹⁾	0.88	1.1	1.1	1.3	1.26	1.30
법인세 ¹⁾	0.17	0.3	0.3	0.4	0.41	1.80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0.10	0.10	0.10	0.10
VAT 도입연도	1999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5. 콜롬비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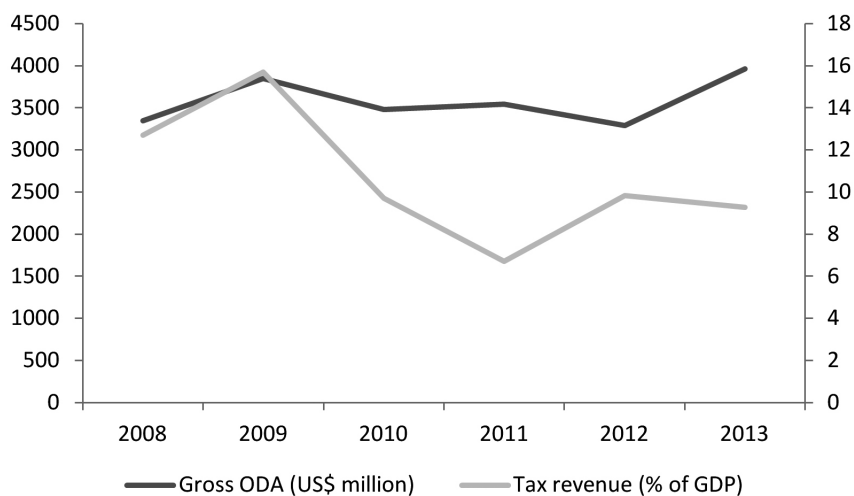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5.3	13.9	12.6	11.9	18.40	10.26
VAT ¹⁾	6.47	5.3	5.1	4.9	9.60	5.27
소득세 ¹⁾	5.64	—	—	—	3.20	0.01
법인세 ¹⁾	0.01	4.0	3.8	4.6	4.40	3.80
조세행정비용 ²⁾	0.75	0.81	0.81	0.81	0.81	0.68
조세공무원 수 ³⁾	—	—	—	—	0.20	0.20
VAT 도입연도	1975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6. 에티오피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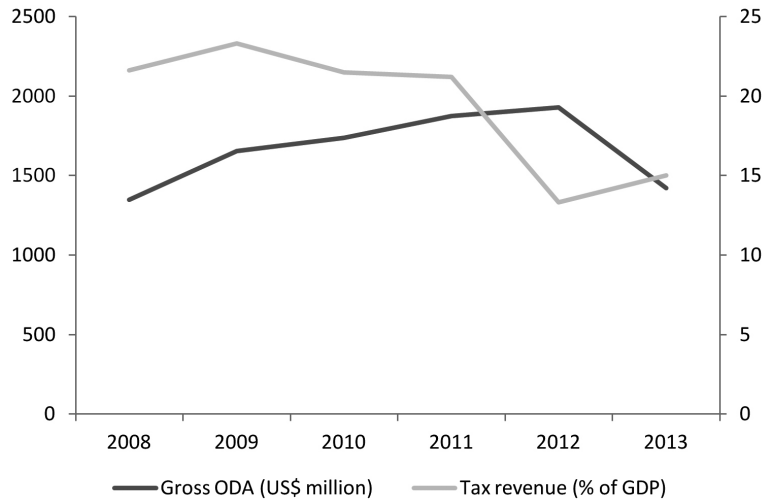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2.7	15.7	9.7	6.7	9.82	9.28
VAT ¹⁾	1.93	—	2.2	2.5	1.91	1.91
소득세 ¹⁾	—	—	1.2	1.1	1.80	1.57
법인세 ¹⁾	1.17	—	1.1	0.3	0.33	0.33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2003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7. 가나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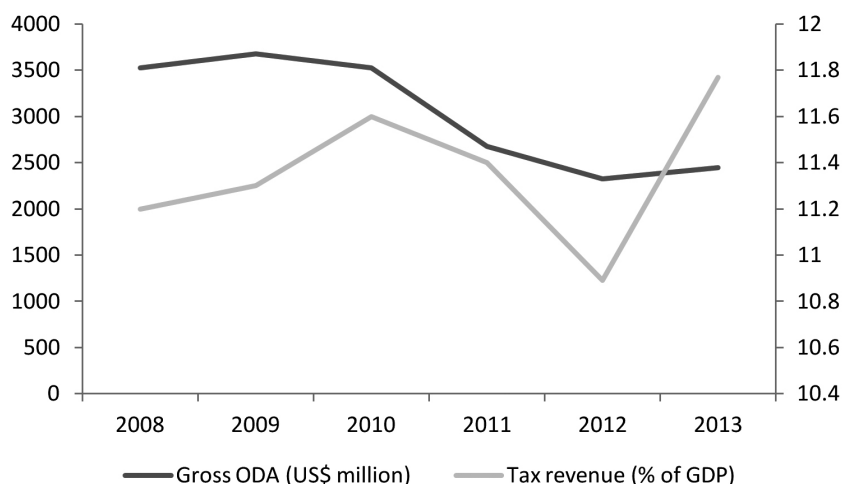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21.6	23.3	21.5	21.2	13.33	15.00
VAT ¹⁾	5.23	5.9	6.2	7.2	4.08	4.65
소득세 ¹⁾	3.20	2.8	3.1	3.2	2.34	2.87
법인세 ¹⁾	2.50	3.2	3.4	3.9	2.41	2.52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1998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8. 인도네시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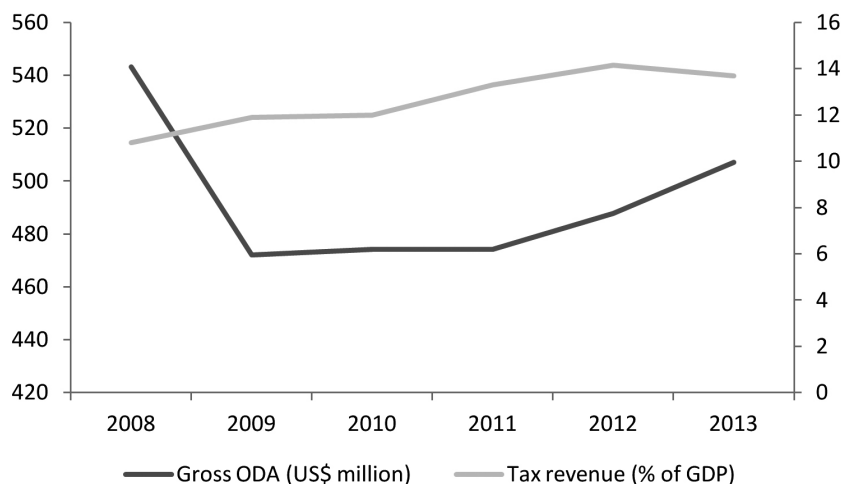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1.2	11.3	11.6	11.4	10.89	11.77
VAT ¹⁾	3.62	—	—	3.8	3.42	3.75
소득세 ¹⁾	0.85	—	—	—	—	5.76
법인세 ¹⁾	3.51	—	—	—	5.50	0.04
조세행정비용 ²⁾	0.38	—	—	—	—	0.55
조세공무원 수 ³⁾	—	0.25	0.25	0.25	0.13	0.13
VAT 도입연도	1985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9. 라오스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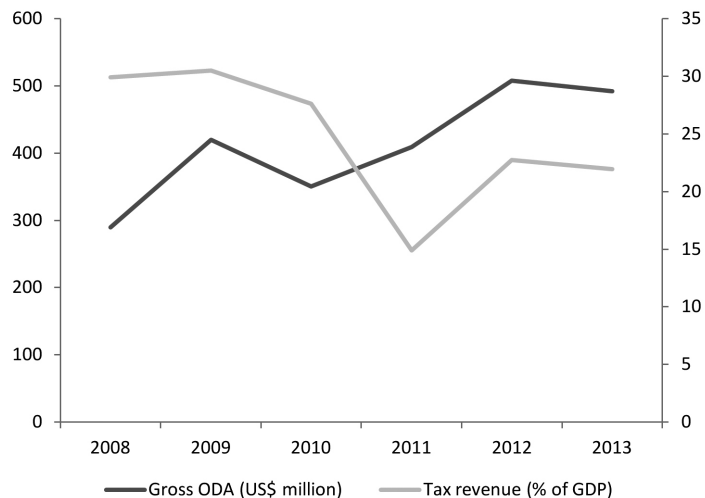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0.8	11.9	12.0	13.3	14.15	13.68
VAT ¹⁾	—	—	—	2.9	3.45	3.50
소득세 ¹⁾	1.40	2.3	2.3	2.3	2.70	2.40
법인세 ¹⁾	0.70	0.6	0.6	0.6	3.60	3.20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2009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0. 몽골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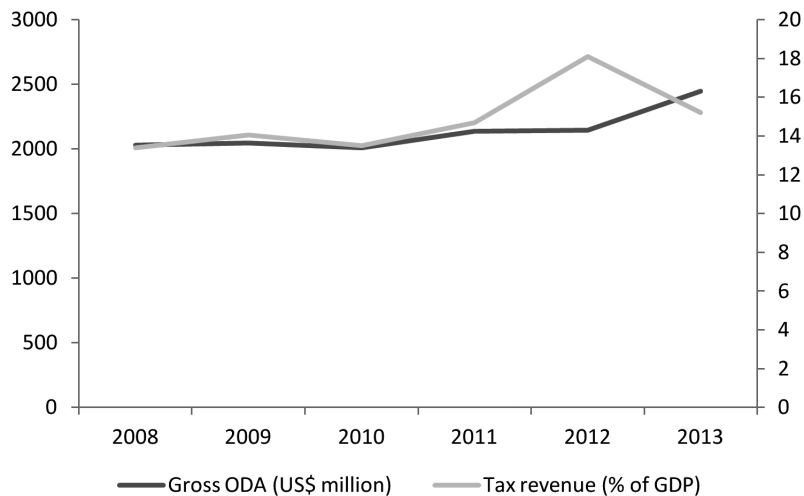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29.9	30.5	27.6	14.9	22.72	21.94
VAT ¹⁾	7.30	2.3	5.3	5.4	6.86	10.05
소득세 ¹⁾	4.80	5.0	4.1	3.4	9.67	5.42
법인세 ¹⁾	2.30	1.6	1.9	1.9	1.90	7.60
조세행정비용 ²⁾	0.22	—	—	—	—	—
조세공무원 수 ³⁾	0.52	0.52	0.52	0.52	0.52	0.52
VAT 도입연도	1998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1. 모잠비크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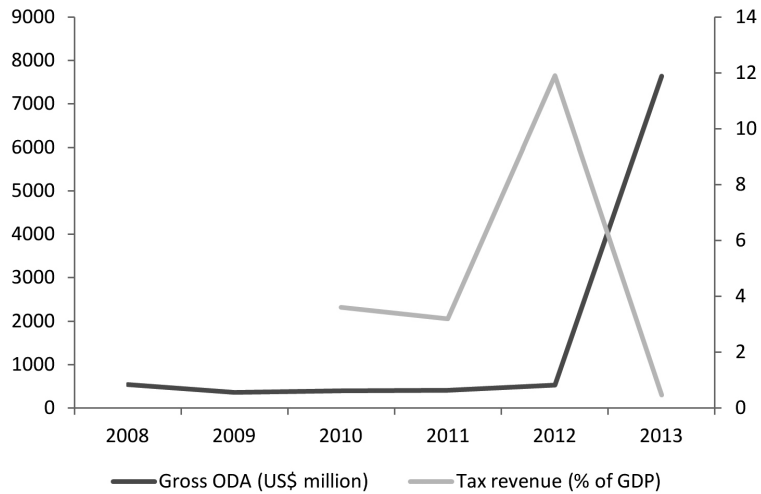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3.4	14.04	13.5	14.7	18.10	15.22
VAT ¹⁾	—	7.49	5.4	8.5	8.50	6.49
소득세 ¹⁾	—	—	2.5	2.5	2.50	2.68
법인세 ¹⁾	—	—	2.5	2.5	6.10	6.80
조세행정비용 ²⁾	—	—	4.82	4.82	4.82	4.82
조세공무원 수 ³⁾	—	—	0.05	0.05	0.05	0.05
VAT 도입연도	1999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2. 미얀마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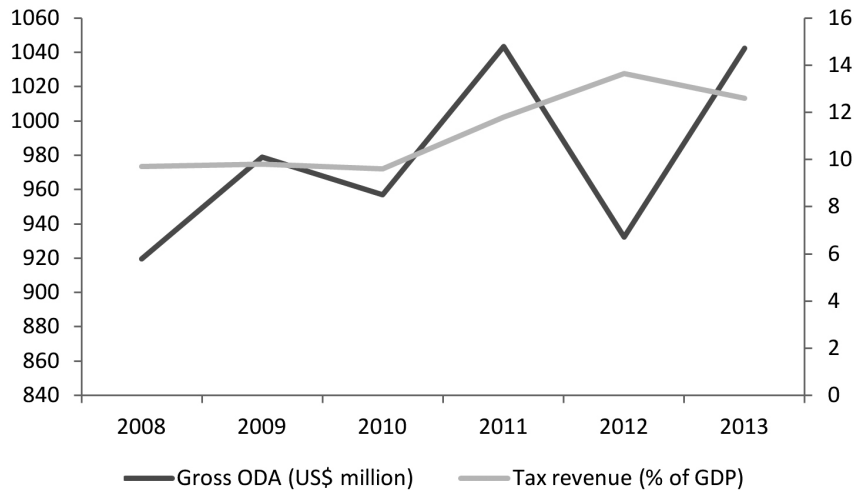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	-	3.6	3.2	11.90	0.46
VAT ¹⁾	-	-	-	-	-	-
소득세 ¹⁾	-	-	0.4	0.1	0.10	0.10
법인세 ¹⁾	-	-	1.6	0.1	0.10	0.10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	-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3. 네팔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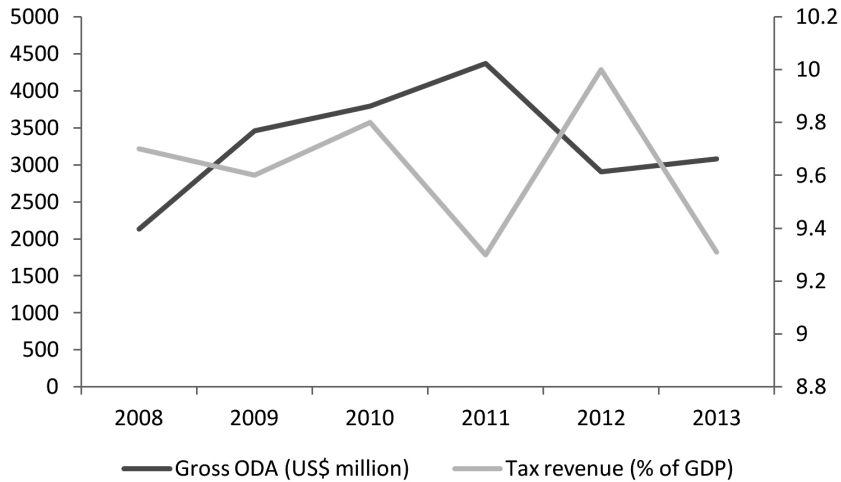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9.7	9.8	9.6	11.8	13.65	12.60
VAT ¹⁾	2.93	3.6	3.6	4.0	4.69	4.59
소득세 ¹⁾	1.38	1.6	1.6	2.0	1.73	1.88
법인세 ¹⁾	0.26	0.3	0.3	0.3	0.79	0.87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1997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4. 파키스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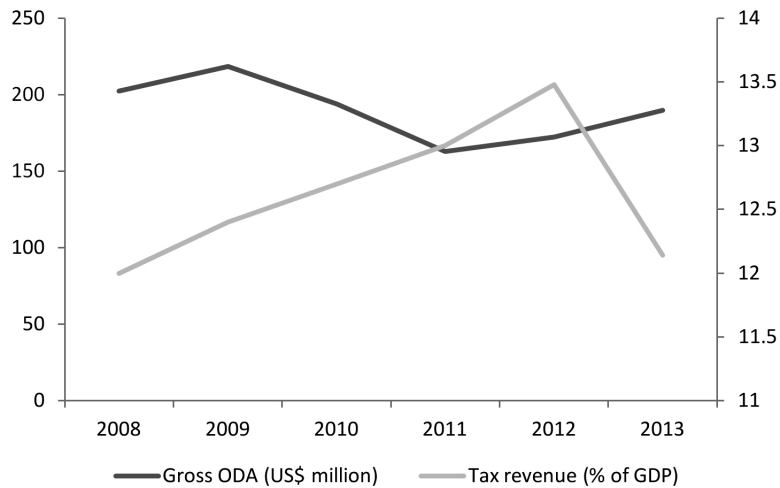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9.7	9.6	9.8	9.3	10.00	9.31
VAT ¹⁾	4.50	3.6	3.5	3.6	3.64	3.63
소득세 ¹⁾	3.10	2.7	2.7	2.7	2.70	2.70
법인세 ¹⁾	—	1.0	3.5	3.5	3.51	3.34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2010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5. 파라과이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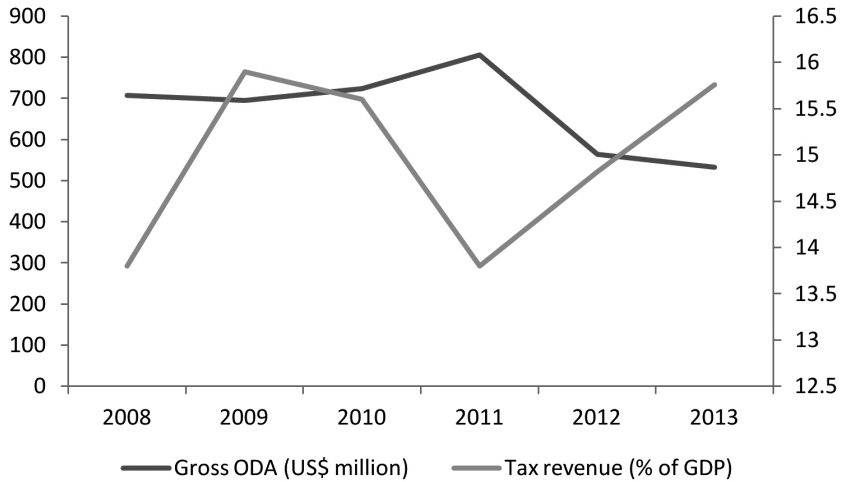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2.0	12.4	12.7	13.0	13.48	12.14
VAT ¹⁾	5.39	6.2	5.7	6.3	6.99	6.24
소득세 ¹⁾	1.84	2.0	2.0	3.1	2.48	2.40
법인세 ¹⁾	—	—	—	—	—	0.00
조세행정비용 ²⁾	1.39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0.14	0.14
VAT 도입연도	1993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6. 페루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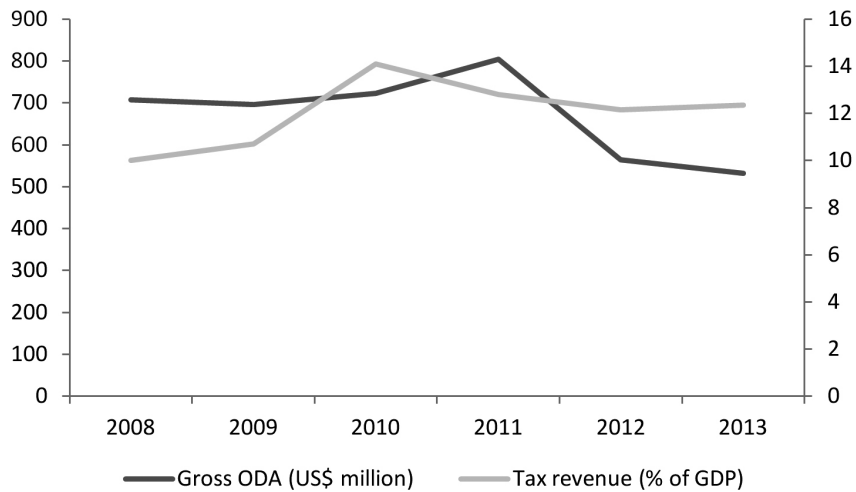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3.8	15.9	15.6	13.8	14.82	15.76
VAT ¹⁾	7.08	7.5	8.5	5.8	6.35	6.63
소득세 ¹⁾	3.09	5.4	4.0	3.8	4.44	5.19
법인세 ¹⁾	1.24	1.4	1.1	1.5	1.50	1.67
조세행정비용 ²⁾	2.01	2.24	2.24	2.24	2.24	2.24
조세공무원 수 ³⁾	0.26	0.26	0.26	0.26	0.25	0.25
VAT 도입연도	2009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7. 필리핀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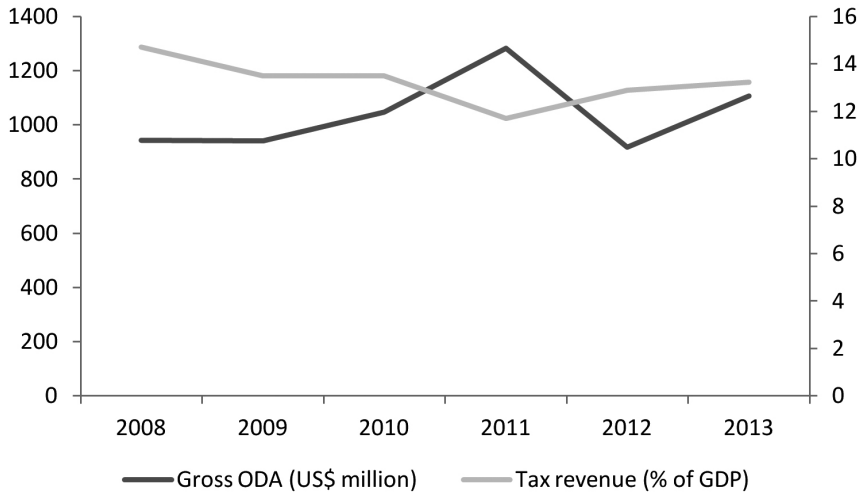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0.0	10.7	14.1	12.8	12.15	12.35
VAT ¹⁾	1.62	2.2	4.0	2.2	1.91	1.88
소득세 ¹⁾	2.86	3.6	3.8	3.3	3.11	3.47
법인세 ¹⁾	2.17	2.1	2.0	1.8	1.86	1.99
조세행정비용 ²⁾	0.69	0.63	0.72	0.72	0.72	0.72
조세공무원 수 ³⁾	0.14	0.13	0.13	0.13	0.13	0.13
VAT 도입연도	1988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8. 르완다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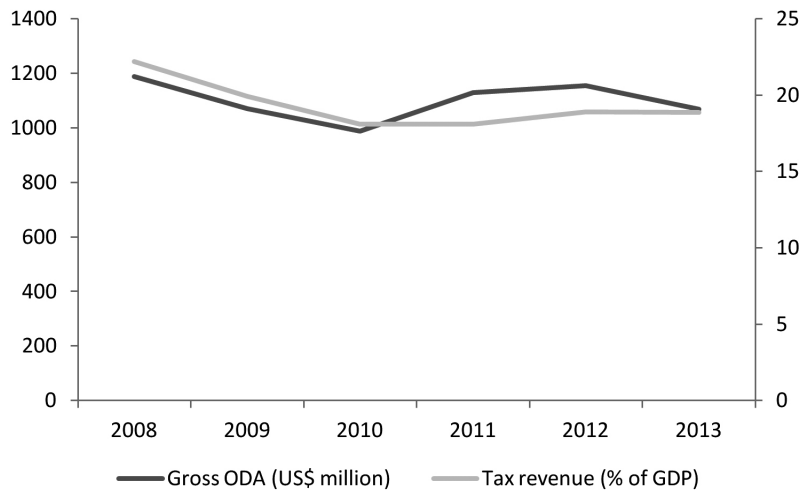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4.7	13.5	13.5	11.7	12.90	13.22
VAT ¹⁾	2.24	4.6	4.8	6.1	6.10	4.11
소득세 ¹⁾	1.29	1.9	2.3	2.3	2.30	1.42
법인세 ¹⁾	1.90	2.6	2.6	2.6	4.90	3.29
조세행정비용 ²⁾	—	3.01	3.31	3.31	3.31	3.31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2001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19. 세네갈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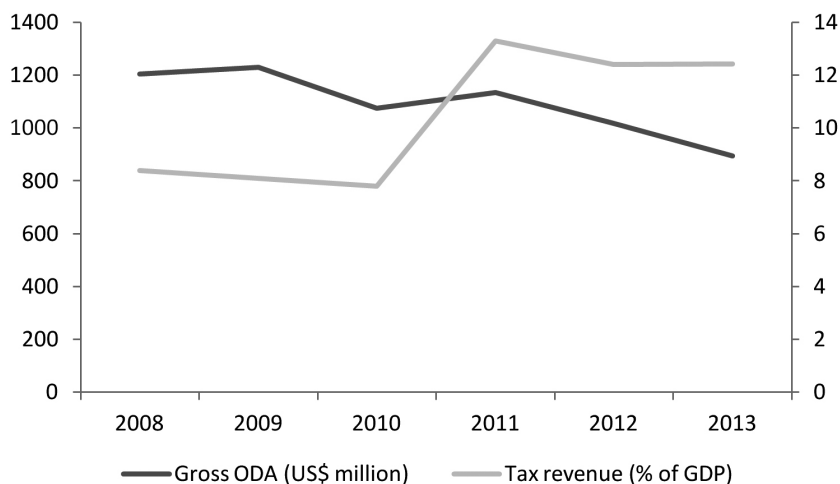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22.2	19.9	18.1	18.1	18.90	18.88
VAT ¹⁾	—	—	7.7	10.8	10.80	7.80
소득세 ¹⁾	—	—	1.5	1.5	1.50	1.40
법인세 ¹⁾	2.29	—	2.3	4.8	5.20	4.90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1980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20. 스리랑카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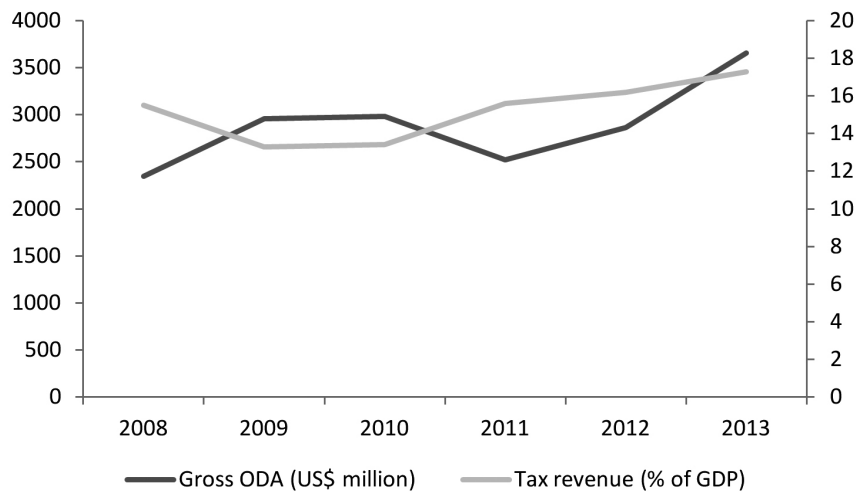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8.4	8.1	7.8	13.3	12.40	12.42
VAT ¹⁾	5.86	5.2	4.6	3.7	3.30	3.29
소득세 ¹⁾	1.06	1.6	1.1	1.1	1.10	1.51
법인세 ¹⁾	0.64	0.5	0.3	3.2	3.20	0.38
조세행정비용 ²⁾	0.40	0.43	0.41	0.41	0.41	0.41
조세공무원 수 ³⁾	0.07	0.07	0.11	0.11	0.11	0.11
VAT 도입연도	1998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21. 탄자니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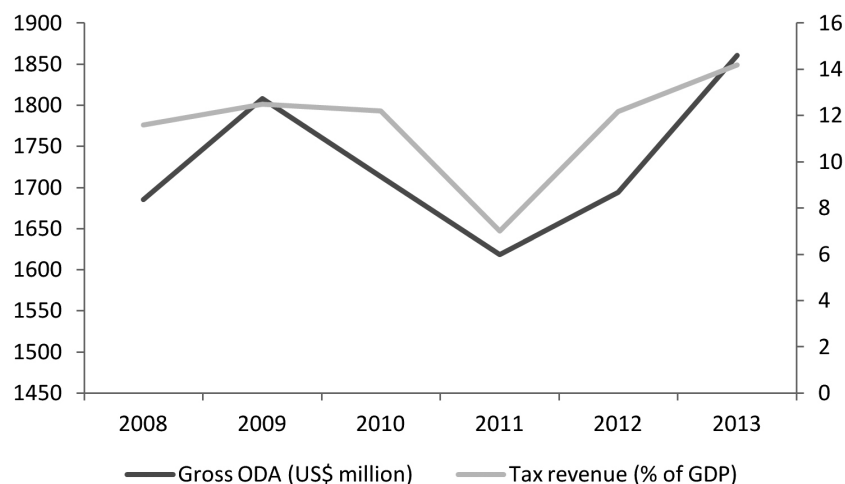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5.5	13.3	13.4	15.6	16.20	17.27
VAT ¹⁾	5.87	4.4	4.6	4.7	5.40	5.26
소득세 ¹⁾	2.50	1.4	1.7	1.7	1.70	2.08
법인세 ¹⁾	2.03	2.1	2.4	4.6	4.40	3.18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0.05	0.05	0.05	0.05	0.05	0.05
VAT 도입연도	1998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22. 우간다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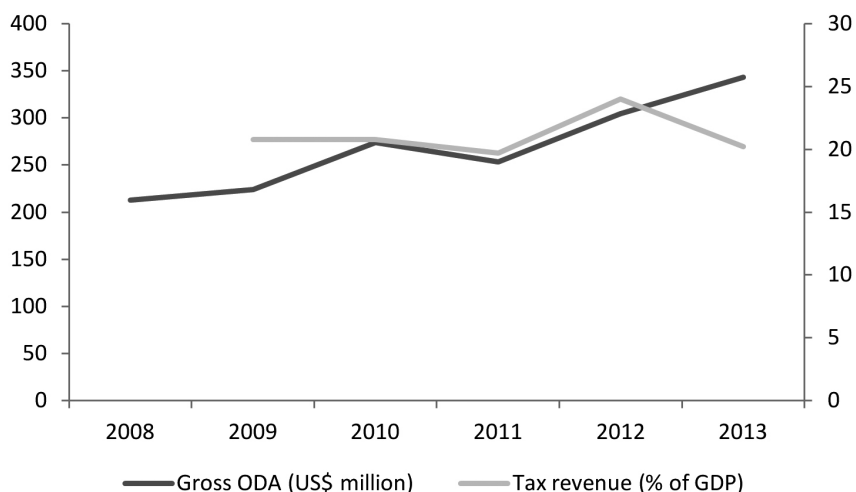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11.6	12.5	12.2	7.0	12.18	14.19
VAT ¹⁾	3.67	4.0	4.3	2.2	3.85	3.53
소득세 ¹⁾	1.84	0.9	0.8	0.4	0.91	3.63
법인세 ¹⁾	1.51	2.8	1.9	1.1	1.91	1.86
조세행정비용 ²⁾	—	3.05	3.05	3.05	3.05	3.05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1996		조세 · 관세 분리 ⁴⁾		통합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23. 우즈베키스탄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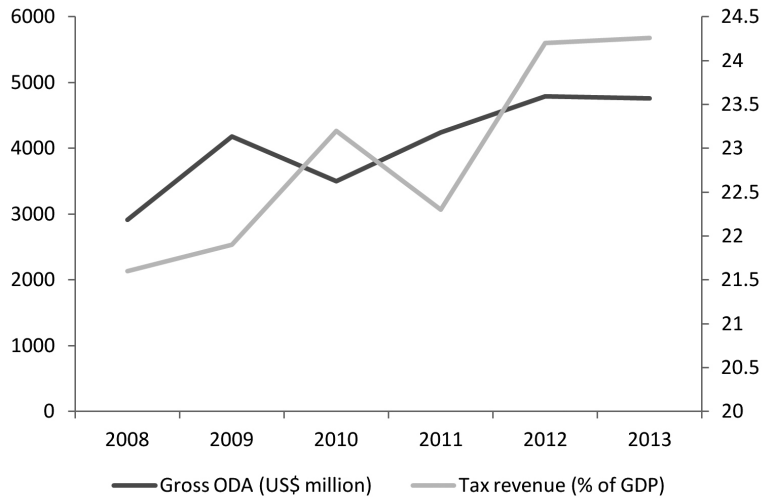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	20.8	20.8	19.7	24.00	20.20
VAT ¹⁾	5.36	6.0	6.0	6.0	9.90	9.90
소득세 ¹⁾	—	0.8	0.8	4.5	2.70	2.70
법인세 ¹⁾	—	2.1	2.1	2.1	2.50	2.50
조세행정비용 ²⁾	—	—	—	—	—	—
조세공무원 수 ³⁾	—	—	—	—	—	—
VAT 도입연도	1992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24. 베트남

□ ODA 유입과 조세수입 추이



출처: OECD Statistics;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 조세수입 구조와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수입 ¹⁾	21.6	21.9	23.2	22.3	24.20	24.26
VAT ¹⁾	5.63	6.9	6.1	6.1	6.10	6.10
소득세 ¹⁾	10.35	9.5	9.2	9.2	7.20	7.30
법인세 ¹⁾	0.53	0.6	0.7	0.7	8.20	8.80
조세행정비용 ²⁾	1.25	1.25	1.25	1.25	1.25	1.25
조세공무원 수 ³⁾	0.47	0.46	0.45	0.45	0.45	0.45
VAT 도입연도	1999		조세 · 관세 분리 ⁴⁾		분리	

¹⁾ % of GDP ²⁾ % ³⁾ 인구 1,000명 당 조세공무원 수 ⁴⁾ tax와 관세(customs)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분리된 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처: USAID Collecting Taxes Database 각 년도.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6-26-213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DRM) 지원방안 연구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인 김인식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연구개발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031)740-0114
팩	스	031)740-0655
홈	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다인스케치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6-26-213

ISBN 978-89-6469-428-2 93320



개발도상국 국내자원동원(DRM) 지원방안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